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곽 은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현황
및 외국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와의
비교 고찰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윤 미 영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현황
및 외국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와의
비교 고찰

곽은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윤 미 영

인 준 서

윤미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3년 10월 현재 40개의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관리하고 있는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음악치료분야의 발전과 질 높은 음악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52개의 음악치료사 관련 민간 자격증을 도출하여 항목별(자격 명칭, 학력 요건, 교육 시간, 임상 실습 시간, 자격검정, 자격갱신 요건)로 분석하고, 5개국(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를 조사하여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과 함께 항목별로 비교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은 5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과는 달리 통일된 명칭 없이 40개의 기관이 등록한 25개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5개국 모두 ‘음악치료학 학사 및 석사’를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은 최소한의 학력 기준 없이 발급되는 자격증이 57개(45.97%)이고, 4개(3.23%)의 자격증이 ‘음악치료학 전공’을 요구한다.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 시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격증이 많았고, 임상실습을 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49개(34.75%)로 확인되었다. 5개국 모두 단일 기관에서 자격에 대한 관리가 되는 반면 한국의 자격증은 통일된 기준 없이 40개의 민간자격관리자에 의해서 각각 발급·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황 조사가 한국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중심어: 음악치료사 자격증, 자격증 제도, 자격증

목 차

논문 개요	i
목 차	ii
표 목차	v
그림 목차	vii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치료사	4
1) 음악치료와 음악치료사	4
2)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6
2. 자격증 제도	10
1) 국가자격	10
2) 민간자격	11
3)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13
3. 각국의 자격증 제도	15
1) 미국의 자격증 제도	15
2) 호주의 자격증 제도	16
3) 영국의 자격증 제도	18
4) 독일의 자격증 제도	20
5) 프랑스의 자격증 제도	21
4. 선행연구	22

III.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25
2. 자료 수집	27
3. 자료 분석	27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현황 및 항목별 분석	28
1) 자격명칭의 비교 분석	28
2) 학력 요건 비교 분석	31
3) 교육 시간 비교 분석	34
4) 임상실습 시간 비교 분석	36
5) 자격검정 비교 분석	38
6) 자격갱신 요건 비교 분석	39
7) 취득자수에 따른 자격증의 심층 분석	41
2. 외국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45
1) 미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45
2) 호주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46
3) 영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47
4) 독일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48
5) 프랑스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49
3.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과 외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비교 분석	49
1) 자격명칭의 비교 분석	49
2) 학력 요건 비교 분석	50
3) 교육 시간 비교 분석	51
4) 임상실습 시간 비교 분석	51
5) 자격검정 비교 분석	52
6) 자격갱신 요건 비교 분석	53

V. 결론 및 제언	54
1. 결론	54
2. 제언	55
3. 맺음말	5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목차

표 목차

<표 II-1> 음악치료사의 전문역량	7
<표 II-2> 자격의 종류	10
<표 II-3> 민간자격증 현황	13
<표 II-4> 공인민간자격증 현황	14
<표 II-5> 미국의 자격증제도	16
<표 II-6> 호주의 자격증제도	17
<표 II-7> 영국의 자격증제도	19
<표 II-8> 독일의 자격증제도	20
<표 II-9> 프랑스의 자격증제도	21
<표 IV-1> 등급별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수	29
<표 IV-2>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명칭	30
<표 IV-3> 각 분석 요소에 따른 자격 요건의 수	31
<표 IV-4>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학력 요건	33
<표 IV-5>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교육 시간	35
<표 IV-6>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임상실습 시간	37
<표 IV-7>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검정	39
<표 IV-8>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갱신 요건	40
<표 IV-9>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자격 요건	41
<표 IV-10>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학력 요건	42
<표 IV-11>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교육 시간	43
<표 IV-12>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임상실습 시간	44
<표 IV-13>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자격검정	44
<표 IV-14>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자격갱신 요건	45
<표 IV-15> 미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 요건	46

<표 IV-16> 호주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 요건	47
<표 IV-17>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명칭	49
<표 IV-18>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학력 요건	50
<표 IV-19>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교육 시간	51
<표 IV-20>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임상실습 시간	51
<표 IV-21>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검정	52
<표 IV-22>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갱신 요건	53

그림 목차

<그림 Ⅲ-1> 분류별 자격증의 수	26
<그림 Ⅳ-1>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학력 요건	31
<그림 Ⅳ-2> 음악치료학 전공 여부에 따른 자격증 수	32
<그림 Ⅳ-3>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교육 시간	34
<그림 Ⅳ-4>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임상실습 시간	36
<그림 Ⅳ-5>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검정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 음악치료학이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도입된 지 16년이 되었다. 그동안 음악치료는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음악치료의 수요자 및 보호자와 관련종사자들의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높아졌고(곽희정, 2005; 김경숙, 1999; 김영미, 2001; 김혜진, 2008; 박선영, 2008; 윤영미, 2011; 진소정, 2002; 천경미, 2007; 황은영, 2008; 황춘애, 2007),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보건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음악치료 수요가 확보되었다(김현지, 2009). 그리고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각종 언론매체에 음악치료사가 유망직종으로 소개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음악치료사를 유망직종으로 소개하고 신 직업 육성방안에 포함시켜서(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고용노동부, 2013), 직업적인 관심의 증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관심이 음악치료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며 음악치료사의 꾸준한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전문 영역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음악치료가 주목을 받고 성장을 거듭하면서 음악치료 학위과정도 확대되었다. 1997년 숙명여자대학교에 최초로 음악치료대학원이 개설된 이래로 2013년 현재 전국 14개 대학원과 3개 대학교에 음악치료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개설되었다(부록 1 참조). 이런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음악, 심리학, 의학 등 음악치료를 위한 이론 학습과 2~3학기의 임상실습, 한 학기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부록 2 참조). 하지만 이와 함께 음악치료사와 관련된 다수의 상업적인 기관, 학회 및 협회들이 생겨났고 자격증을 남발하여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 2008년에 인애복지재단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음악심리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음악치료사 관련 민간자격을 처음으로 등록하였

고, 2013년 10월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40개의 기관 및 협회에서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인터넷 강의와 인터넷 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교육 이수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일부 자격증은 학력 기준을 ‘고졸’로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고, 임상실습을 교육에 포함시키거나 자격기준으로 제시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다. 이렇게 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고 상당수가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김윤겸, 2010).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문제는 국가 민간자격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하여 가속화되었고,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의 일환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치료의 수요자는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치료 서비스에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앞서 언급한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의 치료사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임상현장에서 음악치료사로 인정받고 근무하게 되면서 음악치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체성이 손상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김윤겸, 2010). 이와 같은 부작용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음악치료사가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방해요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음악치료의 수요자들은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음악치료사 관련 민간자격증은 40개의 민간협회에서 개별적으로 발급·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치료분야의 발전과 질 높은 음악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 음악치료 관련 자격증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외 자격증 제도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민간자격증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비교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가 정착된 국외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를 알아보고,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과 외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 발급 기준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외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항목별, 즉 자격명칭, 학력, 교육 시간, 임상실습 시간, 자격검정 방법, 자격갱신 요건으로 비교분석하여 각 기관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취득 조건 및 실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를 알아본다.

3)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과 5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를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치료사

1) 음악치료와 음악치료사

음악치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음악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Bruscia(2003)는 “음악치료란 치료사가 내담자를 도와 변화의 역동적인 힘을 발달시키는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사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계적인 중재의 과정이다.”(p.35)라고 하였다. ‘체계적인 중재의 과정’이라는 것은 치료사에 의해서 목적성 있는 시도로서 진단, 중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치료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다.’라는 것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음악치료사가 클라이언트의 건강과 관련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구체적인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인데, 이는 발병학적, 건강유지적 인식을 넘어 개인의 모든 잠재성에 도달하고 생태적 전체가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음악적 경험’은 사람, 특정한 음악적 과정, 결과물, 환경이나 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즉흥연주, 재창조 연주, 작곡, 감상이 주된 방법으로 제공된다. 치료 과정에서의 핵심은 치료사, 음악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이다. 치료사, 음악,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의 음악경험에 대한 치료사의 해석과 디자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혼합되고 상호교류하면서 ‘변화의 역동성’을 가져온다.

미국음악치료협회(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AMTA)는 음악치료에 대하여 “음악치료는 승인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 음악치료사에게 치료적 관계에서 개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음악 중재를 임상적, 증거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AMTA, 2013)이라고 정의하여, 음악치료

제공 주체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치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음악적 반응을 통해서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사회적 기능, 의사소통 능력, 인지 기술 등을 평가하고, 즉흥연주, 수용적 음악 감상, 노래 만들기, 가사 토의, 음악과 심상, 음악 연주 등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개인 또는 그룹을 위한 음악 세션을 계획하며, 치료 계획, 지속적인 평가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하였다 (AMTA, 2013).

2006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음악치료사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하였는데, 음악치료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음악치료사는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하여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내담자를 돕는다. 내담자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필요를 정확히 사정하고 이에 기초해 음악치료 목적과 목표를 확립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음악치료 활동을 구성하고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한다. 도출된 결과를 내담자, 보호자, 관련 전문가들과 공유한다(정향진, 2006, p.1).

음악치료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클라이언트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발달특성 및 음악적 능력을 사정하여 장·단기 치료목표를 설정하는 클라이언트의 진단이다. 둘째는 음악치료의 방법·기법을 선택하고 음악치료활동을 구성하여 치료를 적용하고 세션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셋째는 팀 내 전문가와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치료계획을 수립하는 팀 협력이다. 넷째는 치료평가인데, 치료평가에는 장·단기 목표의 달성여

부 평가, 음악치료 중재의 재구성, 클라이언트 및 보호자 상담, 관련전문가 상담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섯째는 연구개발이다. 사례를 연구하거나 대상별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사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정향진, 2006).

이상의 음악치료 정의와 음악치료사의 직무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 치료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학제 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는 음악심리학, 음악사회학, 음악미학, 음악의 생리학과 신경학, 심리치료, 정신의학, 특수교육 등 임상실습을 위한 학문적 기초 확립과 함께 치료적 개입으로서 음악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기 기반 훈련 같은 독특한 형태의 준비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정현주, 2007).

2)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음악치료사는 건강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특별히 훈련된 사람’으로써, 전문성은 치료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Bruscia, 2003). Bruscia, Hesser와 Boxill(AMTA, n.d., 재인용)은 음악치료의 전문성을 음악적 기초, 임상적 기초, 음악치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와 관련하여 음악치료사의 훈련 내용과 수준의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AMTA는 이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AMTA전문역량(AMTA Professional Competencies)에 대하여 규정하였다(AMTA, 2008).

AMTA전문역량의 음악적 기초 영역에는 음악 이론과 역사, 작곡과 편곡 기술, 연주 기술, 건반 기술, 기타 기술, 성악 기술, 타악기 기술, 비심포닉 악기 기술, 즉흥 기술, 지휘 기술, 동작 기술이 있다. 그리고 임상적 기초 영역에는 장애, 치료 원리, 치료적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 영역에는

기초와 원리, 사정평가, 치료 계획, 치료 적용, 치료 평가, 문서화, 종결 계획, 전문적 역할과 윤리, 학제 간 협력, 슈퍼비전과 행정, 연구 방법이 있다. AMTA 전문역량의 자세한 내용은 표 II-1과 같다(AMTA, 2008).

<표 II-1> 음악치료사의 전문역량

영역		내용
음악 기초	음악이론과 역사	표준 작품에 대한 이해,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 특성 식별, 온음계와 반음계 구성의 멜로디 시창, 멜로디·리듬·화성진행 청음, 전조
	작곡과 편곡 기술	간단한 반주 붙여 작곡, 소규모 성악/기악 합주로 편곡·전조·단순화
	연주 기술	학부 수준의 연주, 악기와 성악 원리의 해석적 이해, 소규모/대규모 합주
	건반 기술	반주, 다양한 조에서 기본 화성 진행으로 연주, 초견 연주, 악보 없이 다양한 장르의 곡 연주, 간단한 곡의 화성화·전조
	기타 기술	반주, 스트리밍과 손가락 피킹 기법 적용, 다양한 장르의 곡 연주, 간단한 곡의 화성화·전조
	성악 기술	합창 이끌기,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로 소통, 양질의 음색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 노래
	타악기 기술	반주, 표준악기와 민속악기의 기법 활용, 리듬 합주
	비 심포닉 악기 기술	민속악기와 전자악기의 활용, 오토하프 또는 기타에 상응하는 악기 연주
	즉흥 기술	타악 즉흥연주, 원곡을 즉석에서 다양한 분위기와 방법으로의 발전
	지휘 기술	정확한 기술로 기본 패턴 지휘, 소규모/대규모의 성악/기악 합주 지휘
임상 기초	동작 기술	구조화되고 즉흥적인 동작활동 진행, 음악의 리듬 구조 이해하여 표현
	장애	장애인의 잠재성, 한계, 문제점 이해, 주요 장애에 대한 원인과 증상 이해, 전형적/비전형적 인체 발달 이해
	치료 원리	치료 관계/그룹치료의 역동과 과정 이해, 다양한 심리치료 접근 방법 이해

	치료과정의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식, 개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 인식, 효과적인 치료사 역할의 사용, 내담자와 치료적 대인관계 수립 및 유지
치료적 관계	
기초와 원리	음악치료 방법·기술·도구의 기본적 지식, 다양한 치료 대상을 위한 치료목적·치료계획·치료적 역할에 대한 지식, 음악적 행동과 경험의 심리적·생리적 측면에 대한 지식, 철학적·심리학적·생리적·사회학적 기초 지식
사정평가	내담자의 긍정적, 부정적 행동, 음악적 기호, 기능/발달 수준을 수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선택과 적용 및 수집된 자료를 통한 내담자의 치료요구 파악
치료 계획	내담자의 요구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치료 목표, 기간, 악기, 장비의 선정 및 효율적인 음악치료를 위한 전략의 선정
음악 치료	비음악적 행동, 의사 결정, 정서적 반응, 창조적인 응답의 유도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제공, 참여 유도를 위한 언어/비언어적 단서제공, 적절한 사회적 행동 모델의 제시, 치료적 언어스킬의 활용, 효과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 각 내담자의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방식의 개발
치료 적용	
치료 평가	효과적인 치료와 평가를 위한 평가 전략의 구상 및 실행, 응답과 반응을 기초로 내담자의 변화를 인지, 치료계획의 수정
문서화	치료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내담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전문적인 보고서 작성 및 내담자의 요구와 법적 규제, 보상기관의 요구에 적합한 보고서 작성, 개발 및 평가, 치료, 평가 등 임상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내담자, 보호자, 팀 구성원과 의사소통
종결 계획	적합한 종료시점의 파악을 통한 종료계획의 개발, 종료의 사전고지 및 종료의 준비

전문적 윤리	역할과	AMTA 코드, 임상 실습 기준 준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접근,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과 존경
학제 간 협력		내담자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음악치료의 역할을 정의, 치료 프로그램의 다른 분야와 협력 관계를 개발
슈퍼비전과 행정		혜택을 통한 슈퍼비전 참여유도, 음악 치료 장비 및 소모품 관리, 일반적인 임상에 필요한 행정 업무 수행
연구 방법		전문 연구 문헌의 정보 활용, 데이터 기반의 문헌 검색, 임상 사례로 연구 결과를 적용

2. 자격증 제도

법률 제 11722호 자격기본법 2조에서 자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자격기본법, 2013). 자격의 종류는 크게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분류된다.

<표 II-2> 자격의 종류

자격 (자격기본법/ 교육부)	국가자격	국가자격 (개별법/ 각 부·처)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 교육부)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 각 부·처)
		사업내 자격 (고용보험법/ 고용부)

(신명훈, 박종성, 2013)

1) 국가자격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의 국가자격으로 구분된다.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 법령으로 자격을 신설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격신설 및 관리의 주체가 된다(자격기본법, 2013).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격으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국가의 기간(基幹)·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노동부령으로 종목을 신설할 수 있고, 해당 중앙행정기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격신설과 관리의 주체가 된다(국가기술자격법, 2010).

국가자격을의 종목은 670종으로 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등 522종이고 개별 법령(66개 개별 법률)에 의한 국가자격은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148종이다.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개별법의 국가자격은 22개 소관 부·처·청에서 관장하고 있다(신명훈, 박종성, 2013).

2)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사업 내 자격으로 나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자격체제에의 부합,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민간자격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

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자격정책심의회가 심의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신설할 수 있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다(자격기본법, 2013).

신설 및 관리자에 대한 법적 제약이 부족한 민간자격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민간자격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등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민간자격관리자들이 여전히 많았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3년 4월에 자격기본법과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민간자격의 자격 검정 전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등록 취소, 자격 검정 정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3).

2013년 10월 기준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은 5,378개이고, 이중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은 실천예절지도사, 병원행정사, 수화통역사 등 91개이다. 사업 내 자격은 고용보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TV Master, 고객상담사 등 116개 종목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표 II-3> 민간자격증 현황(2013년 11월 기준)

부처별 등록현황		연도별 등록현황			
관계 부처 명	자격 수	연도	등록자격수	말소 자격 수	현재 자격 수
교육부	1,917	2008	654	16	638
문화체육관광부	1,719	2009	380	2	378
보건복지부	511	2010	539	14	525
산업통상자원부	452	2011	1,053	15	1,038
농림축산식품부	177	2012	1,453	2	1,451
기타	599	2013	1,348	0	1,348
계	5,378	계	5,427	49	5,37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3)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는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된 자격 중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이다.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신청을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계 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사·연구를 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의견을 첨부하여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자격정책심의회가 심의결과를 통보하면 주무부처는 공인여부를 민간자격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자격기본법 시행령, 2013).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기준으로서 전반적인 운영방안에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의 부합, 자격체제에의 부합,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

용성의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자격 관리·운영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자격기본법, 2013). 실질적 자격조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을 보유하여야 한다(자격기본법 시행령, 2013).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주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주무부 장관은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자격기본법, 2013). 2012년에 공인 신청을 한 민간자격은 62개이고 그 중 6개만이 공인되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 공인신청을 한 민간자격 1,168개 중 공인된 것은 111개이고 그 중 3개는 공인취소, 17개는 공인 만료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표 II-4> 공인민간자격증 현황(2013년 11월 기준)

부처별 자격현황		연도별 자격현황				
관계 부처 명	자격 수	연도	공인	공인취소	공인만료	누계
교육부	28	2007	3	0	1	70
미래창조과학부	18	2008	7	0	0	77
산업통상자원부	8	2009	11	0	0	88
금융위원회	7	2010	10	0	1	97
기획재정부	5	2011	4	0	13	88
기타	25	2012	6	1	1	92
계	91	2013	-	-	1	9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3. 각국의 자격증제도

1) 미국의 자격증제도

미국의 자격은 크게 ‘국가면허’(federal license), ‘민간자격’(private certification), ‘공인민간자격’(accredited certification)으로 운영된다. 국가면허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업종보호와 직함보호를 한다. 민간자격은 자격검정을 민간 기구에 맡겨 시행하는 것으로 직함보호만 가능하다. 미국의 민간자격은 각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977년부터 공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민간자격 인정기구로 ‘미국 표준원(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과 ‘직무능력관리위원회(NOCA: 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etency Assurance)’가 있다. 자격제도는 주정부가 공적 관리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 주정부는 인증권한만 가지고 개별 자격종목의 신설, 시험 관리, 등록은 분야별 협회가 관리하고, 자격증의 질 관리는 NOCA가 구성한 ‘국가검정사업위원회(NCCA: 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가 맡고 있다(신명훈, 박종성, 2013).

<표 II-5> 미국의 자격증제도

	국가면허 (federal license)	민간자격 (private certification)	공인민간자격 (accredited certification)
기능	업종보호 직함보호	직함보호	직함보호
신설 및 관리주체	주정부 연방정부		업종별 협회
관리기준	법률	자율적 관리, 운영	공인기관에 의한 검정
검정기관	-	-	미국표준원(ANSI) 직무능력관리위원회 (NOCA)
특징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	지식, 기술의 습득 수준의 척도	검정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2) 호주의 자격증제도

호주의 자격증은 크게 교육훈련과정과 직접 연관된 교육훈련자격, 전문직업과 관련된 전문자격, 기타자격으로 구분된다. 교육훈련자격에서는 호주자격체계(AQF)를 구축하여 기준을 총괄하고 있는데 중등교육부문, 직업교육훈련부문, 고등교육부문을 나뉜다. 각 영역은 다양한 산업 및 제도적 연계가 있지만 단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자격은 정부가 법령에 의해 자격시험 및 실무경험을 거쳐 전문자격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규제자격과 전문협회 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는 자율규제자격으로 구분된다. 기타자격에는 제품공급자자격과 서비스업체자격 등이 있다. 호주의 자격

체계에서는 형식학습(formal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대학, 기타 등록 교육훈련기관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또는 자격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비형식학습(non-formal learning)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김상진, 이동임, 2005).

<표 II-6> 호주의 자격증제도

자격유형	대표 자격	관리기관
교육훈련자 격	중등교육부문 SSCE	주, 준주 법정위원회(Statutory Boards)
	직업교육훈련 부문 Certificate I~IV	등록훈련기관(RTO), 호주품질훈련체계(AQTF) 기준
	고등교육부문 Diploma, Advanced Diploma	
전문자격	법률규제자격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치과 의사, 의사, 간호사 등	국가에 의한 법적통제
	자율규제자격 회계사, 보험 계리사, 건물 측정사, 컴퓨터전문가, 영양사, 엔지니어 등	분야별 전문협회
기타자격	제품공급자자 격 Cisco, Microsoft	-
	서비스업체자 격 McDonalds	

3) 영국의 자격증제도

영국의 자격증은 크게 일반자격(general qualification), 일반직업자격(vocational-related qualification), 직업자격(occupational qualification)으로 구분된다. 자격교육과정원(QCA: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이 자격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국가직업자격(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과 일반국가직업자격(GNVQ: 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이 국가 차원의 자격 체계로 운영된다. NVQ는 국가직업기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에 기초하여 5단계의 등급으로 나눈 것이고, GNVQ는 3단계의 등급으로 정규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자격취득 프로그램이다. GNVQ는 전문직업자격인 NVQ의 1-3단계와 연계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직업자격의 관리·운영 자체를 전적으로 전문직 단체나 협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자격제도 운영의 질 관리는 선도단체(Lead Body), 검정단체(Awarding Body),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와 함께 교육훈련부(DfE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가 위임한 공공기관인 QCA(스코틀랜드는 SQA)에서 주로 담당한다(신명훈, 박종성, 2013).

<표 II-7> 영국의 자격증제도

	직업자격 (occupational qualification)	일반직업자격 (vocational-related qualification)	일반자격 (general qualification)
자격수준	NVQ 수준5	GNVQ 상급	GCSE A 등급
	NVQ 수준4		
	NVQ 수준3	GNVQ 중급	GCSE A~C 등급
	NVQ 수준2		
	NVQ 수준1	GNVQ 하급	GCSE D~G 등급
자격내용	특정영역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모든 직업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 작업능력	학생들의 전반적 학업성취도, 인문자격
자격관리 및 운영		분야별 협회	
자격 기준 및 질 관리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자격교육과정원(QCA)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자격원(SCA)	
자격별 연계	고등 교육기관	GNVQ상급을 GCSE A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진학 시 NVQ와 GNVQ와의 연계	GNVQ 상, 중, 하급은 각각 NVQ 3, 2, 1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4) 독일의 자격증제도

<표 II-8> 독일의 자격증제도

자격유형	시행기관	응시자격
학사 기술자	주정부	4~5년제 정규대학 졸업, 현장경력
	교육부	1년
기술자	주정부	3년제 전문 단과대학 졸업, 현장경력
	교육부	1년
엔지니어	주정부	직업학교 졸업, 1.5년~3년의
	교육부	실무경험, 기술공학교졸업
마이스터	산업마이스터 상공회의소	직업학교졸업, 기능공 자격취득, 현장경력 3년
	수공업마이스터 수공업협회	
기능공	산업기능공 상공회의소	직업교육훈련 졸업자, 졸업예정자 혹은 응시직종 교육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실무를 경험한 자
	수공업기능공 수공업협회	

독일의 자격증은 일반학교와 직업계 학교에서 수여하는 졸업 증명서와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에서 수여하는 시험합격 증명서로 이원화되어 있다. 독일의 자격은 기능공(Facharbeiter), 기술자(Techniker), 마이스터(Meister), 엔지니어(Ingenieur)로 구분되는데, 이중 엔지니어 자격은 별도의 시험이 없이 대학졸업만으로 취득할 수 있고, 기술자 자격은 이론시험의 합격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엔지니어와 기술자와 같은 기술계 자격의 검정 시행기관은 주정부 교육부이고, 마이스터와 기능공과 같은 기능계 자격의 검정 시행기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협회이다(신명훈, 박종성, 2013).

5) 프랑스의 자격증제도

<표 II-9> 프랑스의 자격증제도

교육수준	자격증	직무수준
의무교육	CEP	의무교육 수준의 단순근로자
의무교육 및 최대 1년의 단기교육	BEPC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단순근로자
견습과정 수준의 직업교육	CAP, BEP	지시사항이 필요한 기능근로자
중등교육, 중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BTn, BT, Bac pro	업무의 장식과 절차에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는 기술자
고등교육, 1차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BTS, DUT, DEUG, DEUST	계획의 수립, 운영진반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지닌 기술자
학사이상의 교육수준	기사자격	업무활동을 관리하는 기사 및 관리직

프랑스의 자격증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교육부와 농림부가 관리·운영하는 졸업장 또는 학위(diplômes ou degrés)와 노동부 공인 하에 훈련기관(중앙부처와 대학 포함) 또는 기업이 관리 운영하는 공인 자격증(titres, certificats)이 있다. 국가자격을 목적으로 다양한 직업 범주 안에 있는 직업 요건과 교육훈련 수준을 일치시키도록 노동인구를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능력 수준을 나타내기보다는 학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자격증은 졸업장이 중심이 되고, 기타 자격증은 학교의

급별 졸업장이나 학위에 어느 정도 상당하는가를 평가받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교육 수준의 CEP, 단기교육 수준은 BECP, 직업교육 수준의 BEP, 중등교육 수준의 BTn, 고등교육 수준의 BTS 와 같이 기타 자격증은 상응하는 학위수준에 따라 6단계의 수준으로 구성된다. 훈련기관은 ‘자격승인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공인을 받으면 다양한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자격체계는 1990년대 초부터 산업별로 전문 직업능력 자격증(CQP: Certificats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이 산업 부문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신명훈, 박종성, 2013).

4. 선행연구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고 있다. 박정선(2004)은 예술치료전문가와와의 인터뷰를 통한 실증적 방법의 조사연구를 통해서 음악치료를 포함한 공연예술치료의 문제점으로 치료사의 자격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의 공연예술치료사의 자격증은 법적인 규제가 없고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권의 공인과정 없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들이 생겨나 자격미달의 치료사들이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치료현장에 있는 전문치료사들의 신뢰도까지 실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예술치료사 자격증에 대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상업적 목적을 가진 단기과정 양성기관 문제와 자격미달의 치료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음악치료사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증에 관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에서 특히 현재 국가자격인 임상심리사와 함께 음악치료사의 국가 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임상심리사와 음악치료사에 대하여 “실제 이들의 업무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이 요구되며, 임상경험과 함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만 전문성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직업적 특성을 보인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민간자격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전문성과 자격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우려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영역과 범위를 보건의료 관련법에 명시하여 임상심리사와 음악치료사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한상근 외, 2006).

김선호(2009)는 음악치료사 자격시험 도입에 관한 인식도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치료사 자격시험의 도입으로 음악치료사의 질, 위상, 교육 수준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음악치료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기관(대학원 등) 졸업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와 ‘비정규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등) 졸업자를 포함하여 차별화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시험 관리는 ‘음악치료사협회’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음악치료사 자격시험의 도입 전 교육기관별로 다른 교육과정 및 교과목 체계를 표준화하고 공통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김윤겸(2010)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 음악치료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특별히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짧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사이에 채용에서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질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사 결과 서비스 제공자들인 음악치료사들의 정보 조사에서 최종학력 전공이 음악치료인 경우(78.3%)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비전공자(21.7%)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되었고, 이것은 자격증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였다. 각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음악치료사 자격의 명칭과 규정이 동일하지 않아서 석사과정 졸업자와 단기과정 이수자들이 동일한 명칭의 자

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자격증을 통해서 질적으로 검증된 치료사를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음악치료사의 명확한 질적 구분을 위해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문제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자료의 분석 결과,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2012년 9월에 113개로 2008년 8개에 비해 14배 이상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음악치료 관련 자격증은 20개로 미술치료 관련 자격증(47개)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상실습 과정 없이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어 제대로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결국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였다(서하나, 2012).

발달장애치료 분야 전문가들은 2013년 현재 발달장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은 비공식적으로 400여개에 이른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일부 자격증은 학력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고, 현장실습 없이도 자격증 획득이 가능하며, 사이버 상에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학사 혹은 석사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치료학 학·석사 학위 소지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협회 혹은 학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치료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언급하였다(김영선, 2013).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2013년 4월 법률 제 11722호 자격기본법의 개정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된 단체만이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등록이 되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현재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은 의료법 규정의 해석 때문에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음악중재전문가,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 기관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다(30쪽 명칭 분석 설명 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의 수는 2013년 10월 현재 5,378 개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음악’이라는 핵심어로 검색했을 때 총 301개의 민간자격증이 검색된다. 그 중 자격증 명칭과 자격증 설명 내용(부록 3 참조)을 분석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언급한 ‘음악치료사’와 부합하는 자격증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음악치료사 직무분석에서는 “음악치료사는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하여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돕는다.”(정향진, 2006, p.1)라고 하였다. 먼저 ‘음악’과 음악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노래, 난타, 타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매개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목적과 직무에 대한 설명이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는 것’, ‘클라이언트를 돕는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목적과 직무에 관하여 ‘심리, 상담, 재활, 임상, 중재, 심리상담, 심리지도, 심리분석, 심리재활, 심리발달, 문제 해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교정, 발달재활, 특수교육, 사회적응력 향상, 정신적·신체적 변화 및 삶의 질 향상, 음악 외적인 영역의 향상’ 등을 포함하였다. 음악외의 형식(색채, 미

술, 놀이, 동작, 무용, 연극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예술치료사’는 음악치료사는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하여’라는 정의에서 벗어나고, 음악 외의 매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총 40개의 단체에서 발급하는 52개의 자격증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림 Ⅲ-1> 분류별 자격증의 수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대표적 선진국 사례로써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음악치료사 자격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와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조사연구를 위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민간자격 정보를 자료 원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1차 자료 수집을 완료한 시점인 7월에는 31개의 기관에서 99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후 자격증 발급 기관과 자격증의 수가 급증하여 10월에 재조사를 하여 9개의 자격발급 기관과 25개의 자격증을 추가하였다. 또한 각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주요 자료 원으로 수집하였으며, 공개된 자료만으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이나 대표메일로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국외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경우, 각 나라별로 자격증의 관리를 담당하는 음악치료협회나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자료 원으로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국내 음악치료사 자격증 자격 취득 및 관리·운영 요건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다양한 핵심어와 요소별 분류를 통하여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주요 요소들을 자격명칭, 학력, 교육 시간, 임상실습 시간, 자격검정, 자격갱신 요건으로 결정하였다. 각 요소에 따라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항목별로 비교·검토 하였다. 그리고 대상 자격증 중 취득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4개 자격증의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요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과 5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요건의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현황 및 항목별 분석

1) 자격명칭의 비교분석

정부는 법률 제 9386호 의료법 27조를 들어서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격증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음악치료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김상진, 김덕기, 2012).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민간자격 명칭사용의 가능여부를 확인받으면 어떠한 명칭이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사’를 대신하는 수많은 명칭의 음악치료사 관련 민간자격증이 생겼다.

40개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음악치료사 관련 민간자격증은 명칭만으로 구분하였을 때 총 5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25개의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음악심리상담사’가 52개 중 21개(40.38%)로 가장 많고, ‘음악심리지도사’가 6개(11.54%)로 두 번째로 많으며, ‘음악심리상담전문가’와 ‘음악심리상담지도사’는 각각 2개(3.85%)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4개 이외의 명칭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8개 기관에서는 2개 이상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최대 5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다. 이들 명칭 중에는 단지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상자를 구별하거나 특정한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즉 ‘특수아동, 노인, 난타, 노래’ 등을 추가하여 자격명칭을 달리한 경우도 있다.

자격증은 명칭 뒤에 등급이 붙어 세분화된다. 음악치료사 관련 52개의 자격증은 단일등급인 것이 있는가 하면 4개의 등급으로 나뉜 것도 있다. 등급으로 세분화된 동일 명칭의 자격증을 각각 한 개의 자격증으로 취급하였을 때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수는 124개가 된다. 124개의 자격증 중에 단일등급의 자격증은 13개(10.48%)인데, 10개는 등급의 표시가 없고 1개는 1급 자격증이며 2개는 2급 자격증이다. ‘1급’ 이상의 명칭(1급, 전문 강사, 최고지도자, 교육 강사, 전문가, 임상감독, 슈퍼바이저, 최고급 포함함)을 사용한 자격증은 54개(43.55%)이고, 자격증 명칭에 ‘2급’을 사용한 것은 41개(33.06%), ‘3급’(준 2급 포함함)을 사용한 것은 19개(15.32%)이다.

<표 IV-1> 등급별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수

등급	자격증 수 (개)
1급 이상 (1급, 전문 강사, 최고지도자, 교육 강사, 전문가, 임상감독, 슈퍼바이저, 최고급 포함함)	54
2급	41
3급 (준 2급 포함함)	19
등급 없음	10
합계	124

<표 IV-2>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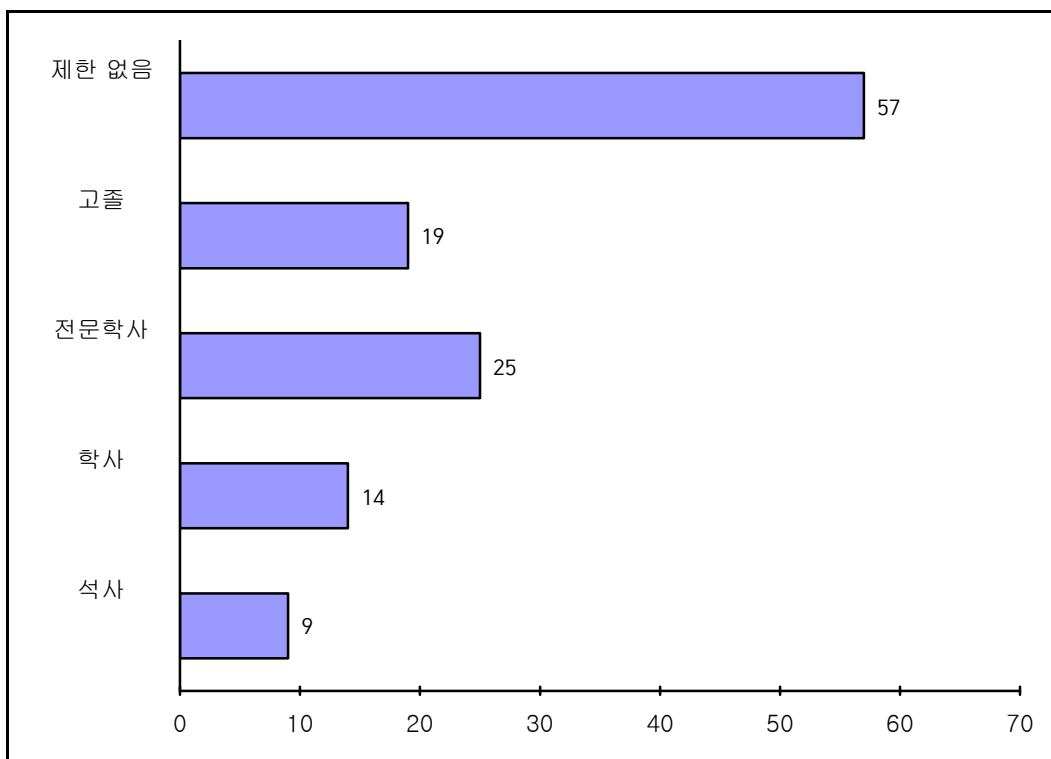
자격명칭	자격증 수(개)	
	등급 세분 전	등급 세분 후
음악심리상담사	21	44
음악심리지도사	6	14
음악심리상담전문가	2	5
음악심리상담지도사	2	2
난타음악심리상담사	1	4
임상음악심리사	1	4
재활음악전문가	1	4
재활타악전문가	1	4
즉흥난타심리지도사	1	4
특수타악전문가	1	4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	1	3
난타재활사	1	3
난타특수교육사	1	3
노래심리상담사	1	3
노래심리지도사	1	3
노인음악심리지도사	1	3
임상음악전문가	1	3
장애인난타지도사	1	3
특수발달음악교육사	1	3
음악정서인지상담사	1	2
특수음악심리상담사	1	2
음악심리분석사	1	1
음악심리피정지도자	1	1
음악중재전문가	1	1
정서발달음악상담사	1	1
합계	52	124

자격 요건의 수는 교육 시간, 임상실습 시간, 자격검정 요건에 따라 상이하
다. 이는 각 자격증이 해당자격증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학
과 학위를 취득하면 교육·임상실습을 면제하거나 이수 시간을 줄여주고, 자
격검정의 형태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분석 요소에 따른 자격 요건의 수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각 분석 요소에 따른 자격 요건의 수

자격증 수	124개	교육 시간	137개
		임상실습 시간	140개
		자격검정	1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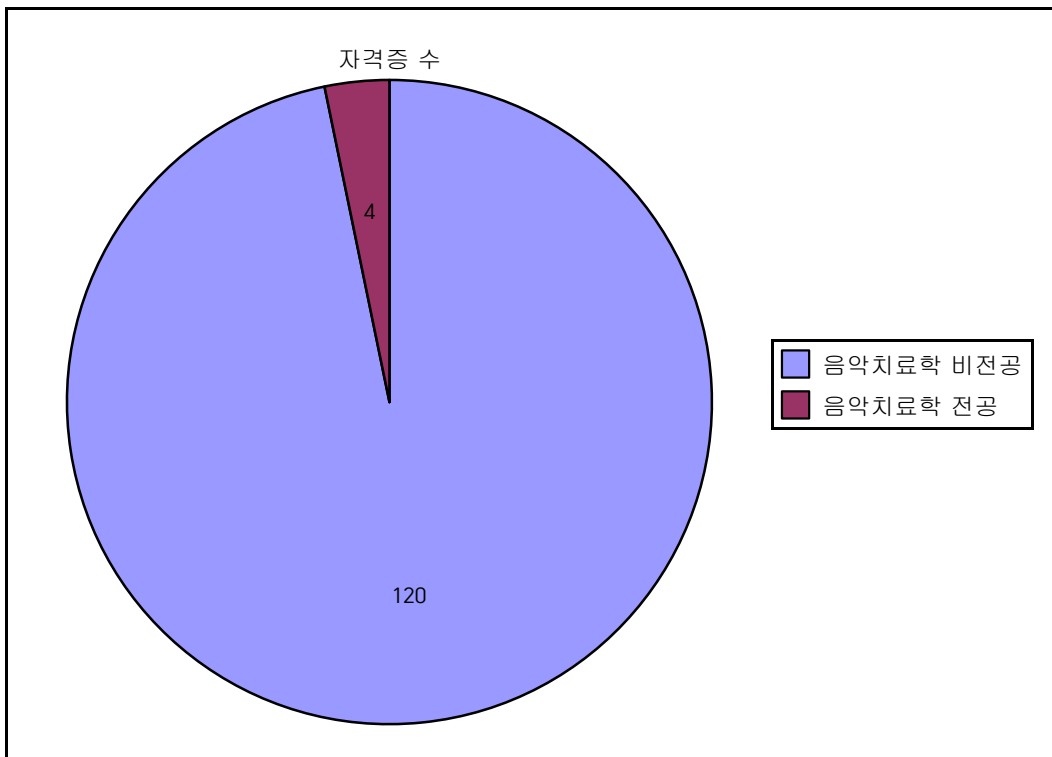
2) 학력 요건 비교 분석



<그림 IV-1>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학력 요건

124개의 자격증은 각각 하나의 학력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학력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 수는 57개(45.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1급 이

상의 명칭을 가진 자격증의 수는 22개(17.74%)이다. 전문학사를 요구하는 자격증은 25개(20.16%)로 두 번째로 많고, 고졸은 19개(15.32%)이며 그 중 1급 이상의 명칭을 가진 자격증의 수는 6개(4.84%)로 조사되었다. 학사는 14개(11.29%), 석사는 9개(7.26%)이다.



<그림 IV-2> 음악치료학 전공 여부에 따른 자격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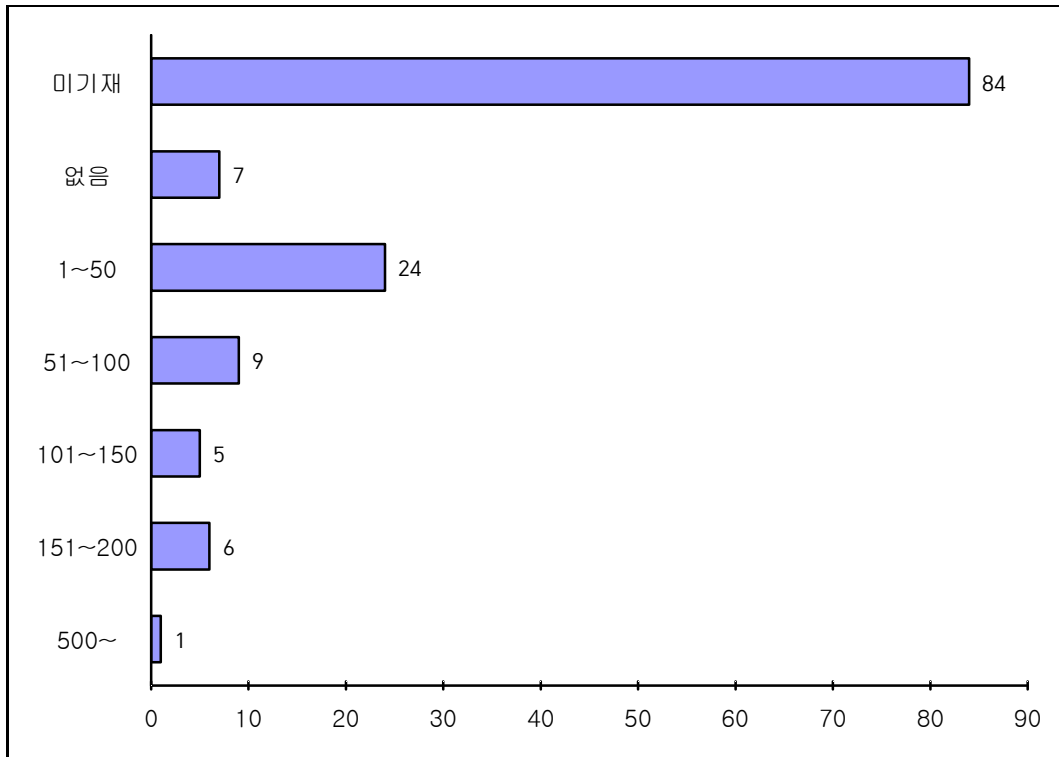
학력 요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전체 124개 중 48개(38.71%)의 자격증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음악치료학 전공’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는 자격증이 4개(3.23%)인 것이다. 4개의 자격증은 2개의 기관에서 발급되는 것으로 1개는 단일등급의 자격증이고, 나머지 3개는 4등급으로 나뉘는 동일 명칭의 자격증에서 1급 이상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해당자격증

의 2급 자격증은 음악치료학 전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1개의 기관만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발급 요건에 음악치료학 전공을 요구한다. ‘음악치료학 전공’을 언급한 자격증이 6개 더 있었지만 해당 자격증들은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경력 2년’ 등을 함께 인정하여 음악치료학 전공을 필수 요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표 IV-4>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학력 요건

학력	자격증 수 (개)	백분율 (%)
제한 없음	57	45.97
고졸	19	15.32
전문학사	25	20.16
학사	14	11.29
석사	9	7.26

3) 교육시간 비교 분석



<그림 IV-3>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교육 시간

교육시간 조건은 자격증 수(124개)보다 많은 137개이다. 이는 13개의 자격증 내에서 기타조건에 따라서 2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조건은 ‘관련학 석·박사인 자, 음악관련 학사·전문학사 이상인 자,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재활 관련 자격증 취득자, 해당자격증의 하위 등급 자격 및 그에 준하는 자격 취득자, 해당자격증의 하위 등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자’ 등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과 ‘여름, 겨울 단기과정’과 같이 자격증 취득시기와 관련된 것이 있다.

교육시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강의 25회’, ‘2박 3일’, ‘온라인 강의 5과목 이수’ 등 시간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것이 85개로 62.04%이다. 조건부로 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7개(5.11%)이다. 음악관련 전문 학사 이상이면 이론교육을 우편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이론교육을 일부 또는 전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며, 경찰, 군 장교, 성직자의 직업군 자체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있다. 50시간 이하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24개(17.52%)로 조사되었으며, 최단 교육 시간은 9시간이고 하루의 교육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있다. 짧은 교육시간은 ‘온라인 강의, 온라인 시험’ 등과 함께 자격증 취득의 용이성을 강조하는 문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51~100시간의 교육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9개(6.57%), 101~150시간은 5개(3.65%), 151~200시간은 6개(4.38%)이고, 약 500시간을 제시한 것이 1개(0.73%)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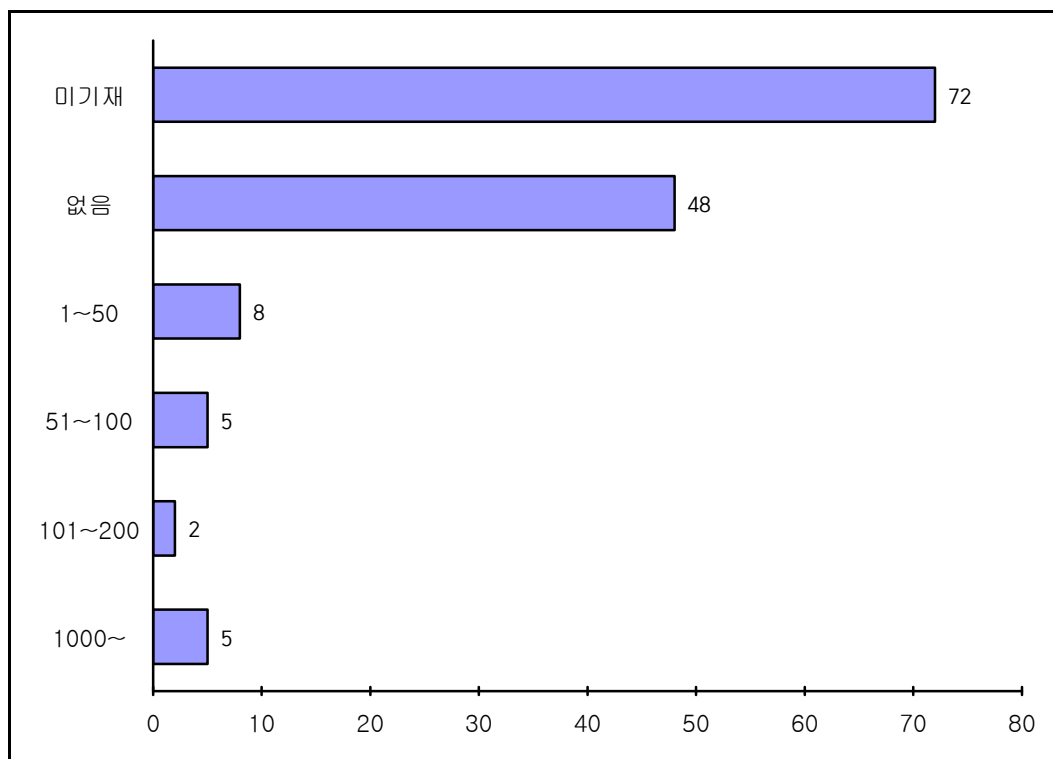
40개의 기관 중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약력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11개이다. 이 중 3개의 기관에서는 음악치료 전공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8개의 기관에서는 음악교육, 상담, 작곡, 특수교육, 직업재활 전공자가 음악치료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표 IV-5>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교육 시간

교육 시간	자격 조건 수 (개)	백분율 (%)
미기재	85	62.04
없음	7	5.11
1~50	24	17.52
51~100	9	6.57
101~150	5	3.65
151~200	6	4.38
500~	1	0.73

4) 임상실습시간 비교 분석

임상실습은 슈퍼바이저(Supervisor)가 수련치료사의 치료과정 및 행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실습교육이다(박혜미, 2011).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음악치료학을 전공할 경우 2~3학기의 실습시수와 1학기의 인턴시수를 합치면 대략 1000시간의 임상실습을 하게 되고, 담당 슈퍼바이저의 임상감독을 받게 된다.



<그림 IV-4>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조건은 총 140개이다. 교육 시간 조건과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임상실습을 조정하기 때문에 총 자격증 수인 125개보다 많아지게 된다. 제시한

임상실습 시간이 있지만 학력 및 경력 인정 시 임상실습이 면제되거나 임상실습 시간이 축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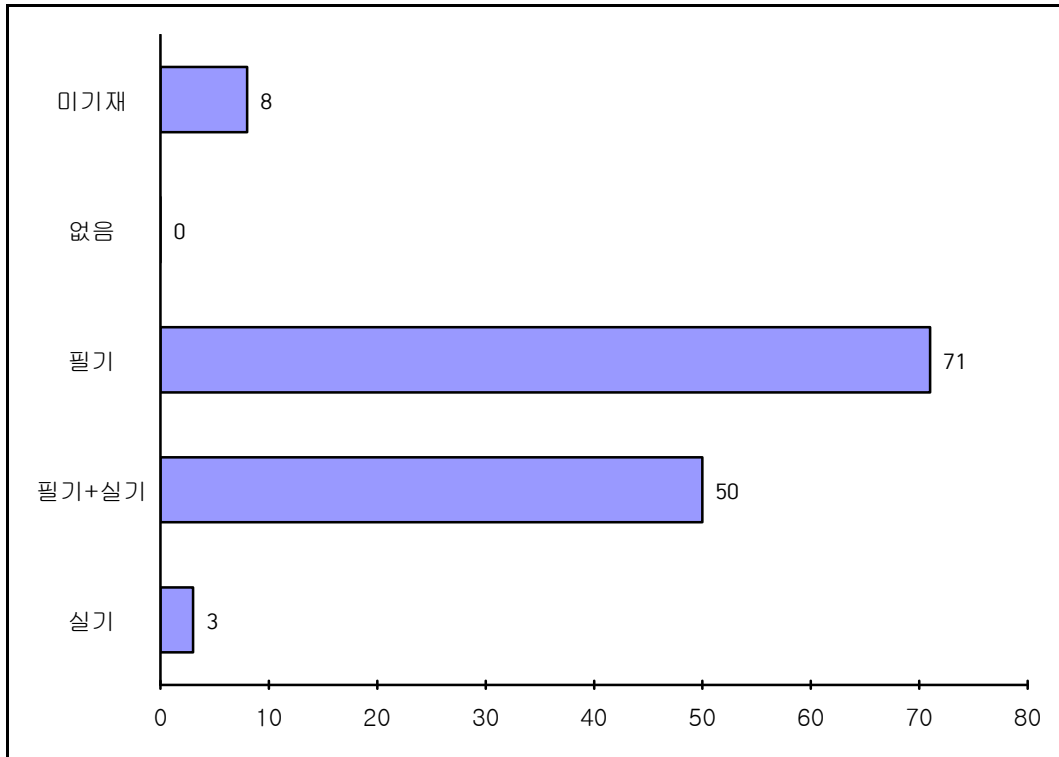
임상실습의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72개(51.43%)이고, 임상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48개(34.26%)이다. 임상실습이 없는 자격 중에 36개는 원래 임상실습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12개는 학력이나 경력이 인정될 경우 임상실습을 면제받는 것이다.

임상실습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전체 140개 중 20개(14.29%)이다. 1~50시간의 임상실습을 하는 것은 8개(5.71%)이고 가장 적은 시간으로 확인된 것은 3시간이다. 51~100시간은 5개(3.57%), 101~200시간은 2개(1.43%), 그리고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하는 것이 5개(3.57%)로 조사되었다.

<표 IV-6>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시간	자격 조건 수 (개)	백분율 (%)
미기재	72	51.43
없음	48	34.26
1~50	8	5.71
51~100	5	3.57
101~200	2	1.43
1000~	5	3.57

5) 자격검정 비교 분석



<그림 IV-5>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검정

자격검정은 132개 조건으로 분류된다. 자격검정 역시 기타 조건에 의해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거나 해당 협회의 교육기관마다 시험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총 자격증수보다 8개가 많다. 8개(6.06%)는 자격검정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3개는 기관 홈페이지의 부재로 보다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1개는 해당 등급만 시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4개는 임상실습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서 자격검정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가장 많은 자격검정 형태는 필기시험으로 71개(53.79%)이다. 이 중 5개(3.79%)는 온라인으로 검정을 시행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함께 시행하

는 경우는 50개(37.88%)이다. 7개의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함께 시행하는 것인데 학력 및 경력이 인정되면 실기시험을 면제해준다. 그리고 1개의 자격증은 교육기관마다 검정방법이 다른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곳과 필기시험만을 시행하는 곳으로 나뉜다. 3개(2.27%)는 실기시험만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는데, 1개는 동일명칭의 2급 자격증에서는 필기시험만을 실시하고 1급 자격증에서 실기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2개는 타약 관련 자격증의 하위등급이다.

자격검정 과목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관마다 자격증 명칭과 유사한 독자적인 명칭의 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심리상담사’의 경우에는 검정과목 명칭이 ‘음악심리상담학, 음악심리상담론, 음악심리상담 기술, 음악심리상담 이론, 음악심리상담 적용, 음악심리상담의 실제’ 등으로 자격증 명칭과 유사하다(부록 3의 자격검정과목 참조).

<표 IV-7>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검정

자격 검정 형태	자격 조건 수 (개)	백분율 (%)
미기재	8	6.06
없음	0	0
필기 (온라인)	71 (5)	53.79 (3.79)
필기+실기	50	37.88
실기	3	2.27

6) 자격갱신 요건 비교 분석

자격 갱신 조건을 제시한 자격증은 124개 중 12개(9.68%)이다. 이는 다른 요건의 정보 공개 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1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는 5년간 8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3가지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국심리상담전문협회에서는 3개 자격증 모

두 5년간 8시간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에서는 3개의 자격증 모두 기간의 정함 없이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자격갱신 조건으로 하고 있고, 한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는 3개의 자격증 모두 기간의 정함 없이 20시간의 보수교육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음악치료학회는 4가지 등급의 자격증과 3가지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5개의 자격증은 자격갱신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없고 2개의 자격증은 3년간 2회의 보수교육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표 IV-8>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 갱신 요건

기관명	자격증 수 (개)	자격 갱신 요건
전국음악치료사협회	1	5년간 80시간
한국심리상담전문협회	3	5년간 8시간
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	3	40시간
한국음악치료사협회	3	20시간
대한음악치료학회	2	3년간 2회

7) 취득자 수에 따른 자격증의 심층 분석

<표 IV-9>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자격 요건

	자격명	취득자 수	학력	교육 시간	자격검정
				임상실습 시간	자격갱신
1	음악심리상담 지도사1급 (한국자원봉사교육 협회)	1227명 (2009~ 2013년)	고졸	미기재 (온라인 5과목)	온라인
				없음	없음
2	음악심리상담사1급 (한국예술치료협회)	796명 (2000~ 2012년)	학사	16시간 없음	필기, 실기 미기재
	음악심리상담사2급 (한국예술치료협회)		전문 학사	120시간 60시간	필기, 실기 미기재
	음악심리상담사3급 (한국예술치료협회)		고졸	120시간 미기재	필기, 실기 미기재
	임상음악전문가1급 (한국음악치료학회)		석사	미기재 미기재	필기 미기재
3	임상음악전문가2급 (한국음악치료학회)	427명 (2010~ 2011년)	학사	미기재 미기재	필기 미기재
	임상음악전문가3급 (한국음악치료학회)		전문 학사	미기재 미기재	필기 미기재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 협회)		학사 (음악 치료 전공)	500시간 1,000시간	필기 5년간 80시간

자격증의 취득자 수가 공개된 것 중에 상위 4개의 자격증을 선별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악심리상담지도사’(한국자원봉사교육협회 발급)는 취득자 수가 1,227명으로 가장 많고, 매 회 실시한 자격 검정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인터넷 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음악심리상담지도사’는 총 14회의 자격 검정에서 96.29%의 평균 합격률을 나타내었고, 모두 1급 자격증이다. 취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음악심리상담사’(한국예술치료협회 발급)는 기관의 인터넷 페이지에 자격 취득자의 명단(2013년 7월 기준)이 게재되어 있고, 그 수를 집계하여 796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1급 자격증 취득자는 96명이고, 2급 자격증 취득자는 700명이다. ‘임상음악전문가’(한국음악치료학회 발급)는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한 5회의 자격 검정 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427명이다. ‘음악중재전문가’(전국음악치료사협회 발급)는 기관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재된 자격 취득자 명단(2013년 7월 기준)을 집계한 결과 2011에서 2012년까지 234명이 확인된다.

<표 IV-10>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학력 요건

1급 기준	학력	음악치료학 전공
음악심리상담지도사 (한국자원봉사교육협회)	고졸	
음악심리상담사 (한국예술치료협회)	학사	
임상음악전문가 (한국음악치료학회)	석사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학사	○

먼저 학력 요건을 살펴보면 ‘음악심리상담지도사’(한국자원봉사교육협회 발급)는 ‘고졸’이상이면 취득 가능하고, ‘음악중재전문가’(전국음악치료사협회 발급)는 ‘음악치료학 학사 및 석사’를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3가지 등급으로 나뉘는 ‘음악심리상담사’(한국예술치료협회 발급)와 ‘임상음악전문가’(한국음악치료학회 발급)는 등급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음악심리상담사’와 ‘임상음악전문가’의 1급 자격증은 각각 ‘학사’와 ‘석사’를 요구하지만,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임상음악전문가’는 1급과 2급 자격증에서 음악치료 전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비전공자의 경우 준 2급부터 시작하여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급을 취득할 수 있다.

<표 IV-11>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교육 시간

1급 기준	교육 시간
음악심리상담지도사 (한국자원봉사교육협회)	알 수 없음 (온라인 5과목)
음악심리상담사 (한국예술치료협회)	16시간
임상음악전문가 (한국음악치료학회)	미기재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500시간

교육 시간도 자격증마다 다르다. 한국자원봉사교육협회 발급 ‘음악심리상담지도사’는 온라인강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예술치료협회 발급 ‘음악심리상담사(1급)’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하루 8시간씩 이틀에 걸친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음악치료학회 발급 ‘임상음악전문가(1급)’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음악치료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기관이 규정하는 임상실습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교육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도 1급 자격 취득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 시간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음악중재전문가’는 교육시간을 500시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 IV-12>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임상실습 시간

1급 기준	임상실습 시간
음악심리상담지도사 (한국자원봉사교육협회)	없음
음악심리상담사 (한국예술치료협회)	없음
임상음악전문가 (한국음악치료학회)	미기재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1000시간

‘음악심리상담지도사’와 ‘음악심리상담사’는 임상실습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임상음악전문가’는 교육시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 모두에서 임상실습 시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음악중재전문가’는 1000시간의 임상실습시간을 요구한다.

<표 IV-13>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자격 검정

1급 기준	자격 검정	검정 과목
음악심리상담지도사 (한국자원봉사교육협회)	필기 (온라인)	음악치료, 음악과 생활,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객관식 100문항)
음악심리상담사 (한국예술치료협회)	필기+실기	음악치료와 재활, 상담심리, 이상심리, 음악 심리, 정신장애편람 (객관식+주관식)
임상음악전문가 (한국음악치료학회)	필기	음악치료학 (4지선다 100문항)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필기	음악 중재 이론, 음악 중재 기술, 음악 중재 윤리 (125문항)

4개의 자격증 모두 자격 검정을 실시한다. ‘음악심리상담지도사’,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는 필기시험만 시행된다. ‘음악심리상담사’는 실기 시험도 포함되어 있다. 실기 시험의 형태나 내용은 알 수 없다. ‘음악심리상담지도사’,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는 모두 객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음악심리상담사’만 객관식 시험과 함께 주관식 시험도 함께 치르게 한다. 검정 과목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음악중재전문가’에는 ‘음악 중재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치료 윤리는 음악치료사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음악중재전문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에서는 치료 윤리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IV-14>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4개 자격증의 자격 갱신 요건

1급 기준	자격 갱신 요건
음악심리상담지도사 (한국자원봉사교육협회)	없음
음악심리상담사 (한국예술치료협회)	미기재
임상음악전문가 (한국음악치료학회)	미기재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5년간 80시간

자격 갱신 요건은 ‘음악중재전문가’만 명시되어 있다. 5년간 8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수교육 이수, 학술대회 참가,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학술 관련 저서 집필, 학술 관련 외국저서 번역, 음악치료전공 박사학위 과정 중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된다. ‘음악심리상담지도사’는 자격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음악심리상담사’와 ‘임상음악전문가’는 보수교육의 정확한 이수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2. 외국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1) 미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미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공인음악치료사(Music Therapist-Board Certified: MT-BC)를 말한다. MT-BC는 별도의 자격인증기관인 음악치료사 자격 인증 위원회(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CBMT)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공인민간자격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뉴욕 주, 조지아 주, 네바다 주, 노스다코타 주, 위스콘신 주에서는 별도로 주 면허(State Licensure)로 발급하는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있다(CBMT, 2102).

AMTA가 승인한 70여개의 전문학교와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슈퍼바이저의 감독을 받는 인턴십 과정을 포함하여 1200시

간의 임상실습을 하면 MT-BC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150문제이고, 자격시험 전까지 교육과 임상실습을 완료해야 한다. MT-BC의 자격갱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4년 내에 재 인증 시험을 치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자격취득 후 5년간 자격관리를 위한 100학점(100 re-certification credits option)을 이수하는 것이다. 자격관리 100학점에는 대학원 과정 수료, 워크숍·강의 참여, 개별화된 자율학습 프로그램 완료, 학술대회 참가, 음악치료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인턴십 과정에서 슈퍼비전 등이 있는데, 치료윤리 교육 3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CBMT, 2012).

<표 IV-15> 미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 요건

자격 요건	
학력	음악치료학 학사 이상
교육시간	미기재
임상실습	1200시간
자격검정	객관식 150문항
자격갱신	5년 내에 재인증 시험 또는 5년간 자격관리 100학점 이수

2) 호주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호주 음악치료 협회는 1975년 시드니에서 열린 1차 음악치료회의에서 설립되었다. 자격인증위원회는 호주 음악치료 협회와 동시에 만들어졌고 해외에서 음악치료 교육 자격을 가진 세 사람으로 구성하여 즉시 자격인증에 대한 요건을 정비하였다. 국외에서 음악치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자격인증이 되도록 하였고, 치료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음악치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자격이 없지만 8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사정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인증은 1984년 종료되었고, 자격인증위원회는 자격등록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Australi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04).

공인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 음악치료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공인된 과정은 3개 대학의 석사과정으로, 2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상실습 640시간이 요구되는데, 이 중 75%(540시간)는 임상감독자로부터 임상감독을 받아야 한다(Australi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04).

<표 IV-16> 호주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 요건

자격 요건	
학력	음악치료학 석사 이상
교육시간	미기재
임상실습	640시간 (540시간 임상감독)
자격검정	없음
자격유지	서류 제출

3) 영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영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Music Therapist'를 말한다. 'Music Therapist'라는 명칭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보건관리전문위원회(Health and Care Professions Council: HCPC)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격명칭의 명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Registered Music Therapist'나 'Music Therapist(HCPC Registered)'를 사용할 수 있다(British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BAMT], n.d.).

영국에서는 예술치료사 학력 요건에서 석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HCPC가 승인한 음악치료 교육과정은 8개이다(HCPC, n.d.). 교육과 임상실습 시간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없이 학위 취득 후 HCPC에 등록하면 자격을 얻는다. 자격 갱신은 매 2년마다 서류 제출로 재등록 신청을 하면 자격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때 서류에는 음악치료 전문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 본인의 활동에 학술적 노력이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 꾸준한 연습으로 서비스제공 품질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 등을 기재하여 자격 평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HCPC, n.d.).

4) 독일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독일은 독일음악치료협회(Deutsche Musik Therapeutische Gesellschaft: DMtG.)에서 음악치료사의 자격과 더불어 음악 교육 및 경험 교환, 국내외에서 치료영역에 관련한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정보 교환, 음악 치료 프로젝트, 교육 행사, 워크숍, 조직, 홍보 및 출판, 음악 치료 장소 및 작업장의 모든 법적 문제와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한다. 독일의 음악치료사 자격 명칭은 'Musiktherapeut'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격 취득 요건은 최소 3년 과정의 교육이수로 음악치료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다. 임상실습은 협회에 등록된 354개(2013년 7월 15일 기준)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지 않았다. 첫 번째 자격갱신은 자격 취득 2년 후에, 그리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음악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DMtG, n.d.).

5) 프랑스의 음악치료사 자격증 제도 분석

프랑스음악치료연합(la Fédération Française de Musicothérapie: FFM)은 6개 대학 및 음악치료 훈련 센터가 모여 만든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자격 명칭에서는 'Musicothérapeute'를 사용하고, 자격 취득 요건에는 단지 '음악치료학 학사' 학위만이 있었으며, 교육 시간이나 임상실습 시간, 자격검정, 자격갱신 요건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음악치료연맹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론 교육과 임상 350시간과 전문 영역에서의 이론교육과 임상 200시간을 입증하는 신청서 제출을 제시하였다 (FFM, n.d.).

3.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과 외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비교 분석

1) 자격명칭 비교분석

<표 IV-17>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명칭

자격명칭	
한국	26개
미국	MT-BC (Music Therapist-Board Certified)
호주	RMT (Registered Music Therapist)
영국	Music Therapist
독일	Musiktherapeut
프랑스	Musicothérapeute

‘음악치료사’는 ‘Music therapist’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치료법 규정의 해석 때문에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음악치료사’를 대체하는 26개의 명칭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

한 5개국에서는 'Music therapist(독일어로 Musiktherapeut, 프랑스어로 Musicothérapeute)'로 통용된다. 5개국에서는 'Music therapist'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공인된'이라는 의미의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 5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모두 공인자격증이고 한 개의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명칭의 다른 자격증이 있더라도 같은 자격으로 취급될 수 없다. 그리고 영국에서 'Music Therapist'는 법에 의해 명칭 자체가 보호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BAMT, n.d.).

2) 학력 요건 비교분석

<표 IV-18>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학력 요건

학력	
한국	없음~석사 (전공 제한 없음)
미국	음악치료학 학사
호주	음악치료학 석사
영국	음악치료학 석사
독일	음악치료학 학사
프랑스	음악치료학 학사

우리나라를 제외한 5개국에서는 모두 '음악치료학 전공'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125개 중 음악치료학 전공을 요구하는 자격증은 4개이다.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학력 제한도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58개(46.4%) 있고 석사를 요구하더라도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5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모두 '음악치료학 전공'을 요구하며 관리하는 협회나 기관에서 음악치료학 전공을 인정하는 대학교와 전문교육기관의 이름을 명시하였다. 특히 호주와 영국에서는 'Masters degree(석사 학위)'라고 명시하여 석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3) 교육 시간 비교분석

<표 IV-19>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교육 시간

교육 시간	
한국	없음~500시간
미국	미기재
호주	미기재
영국	미기재
독일	미기재
프랑스	미기재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 명시하지 않아서 한국과의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은 교육 시간 요건이 없는 것부터 500시간까지 최저 시간과 최대 시간의 차이가 크다. 5개국의 자격증은 단일한 공인 자격증으로써 협회에서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다. ‘음악치료학 전공’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거나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4) 임상실습 시간 비교분석

<표 IV-20>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시간	
한국	없음~1500시간
미국	1200시간
호주	640시간
영국	미기재
독일	미기재
프랑스	미기재

임상실습 시간도 교육 시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시간의 언급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48개(34.26%)의 자격증이 임

상실습 없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지만, 5개국에서 임상실습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나라도 ‘음악치료학 전공’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임상실습과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5개국에서 임상실습 없이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슈퍼바이저의 임상감독을 받는 인턴십 과정을 포함하여 1200시간’이라고 명시하였고, 호주는 640의 임상실습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 75%(540시간)는 슈퍼바이저의 임상감독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5) 자격 검정 비교분석

<표 IV-21>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 검정

	자격 검정	관리자
한국	자격증마다 형태가 상이함	41개 기관
미국	객관식 150문항	단일 기관
호주	없음 (등록제)	단일 기관
영국	없음 (등록제)	단일 기관
독일	없음 (등록제)	단일 기관
프랑스	없음 (등록제)	단일 기관

한국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검정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자격 검정을 시행하지 않는다.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시험 형태는 필기만 시행하는 것 71개(53.38%), 필기와 함께 실기를 시행하는 것 51개(38.35%)와 실기만을 시행하는 것 3개(2.26%)도 있었는데, 미국은 필기시험만 시행한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는 모두 자격 검정 없이 음악치료학 학위를 비롯한 자격 취득 조건을 갖춘 후 등록을 하면 자격을 얻게 되는 체계이다.

자격 발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5개국 모두 공인된 단일기관에서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은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마다 각각 다른 자격검정 형태·기준으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자격 갱신 요건 비교분석

<표 IV-22> 각국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자격 갱신 요건

자격 갱신 요건	
한국	없음~5년간 80시간
미국	5년 내에 재 인증 시험 또는 5년간 자격관리 100학점 이수
호주	서류 제출
영국	2년마다 서류 제출
독일	첫 번째 갱신은 2년 후, 5년마다 서류 제출
프랑스	미기재

한국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은 대체로 자격 갱신 요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113개, 90.4%), 프랑스를 제외한 4개국에서는 자격 갱신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5개국 중 유일하게 자격 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던 미국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재 인증 시험을 치르거나, 5년간 자격관리를 위한 10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00학점은 슈퍼비전, 대학원 과정, 학술대회 참가 등으로 이수할 수 있는데, 치료 윤리 교육 3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영국, 독일은 서류 제출을 통해서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영국은 매 2년, 독일은 2년 후 첫 번째 갱신을 하면 매 5년, 호주는 정확한 기한을 확인할 수 없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민간자격증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현황을 알아보고, 주요 선진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발급기관, 자격명칭, 등급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없다. 현재 국내 40개의 기관에서 25개의 각각 다른 이름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5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단일 자격증이지만, 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민간자격이 없고 금지 조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격증의 명칭과 등급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여 객관적으로 자격의 질을 평가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음악치료사를 고용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고용인, 내담자, 보호자, 일반인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음악치료사는 전문인으로써 음악치료학을 심도 있게 학습해야 하는 학문이나, 고등교육기관의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124개 중 120개(96.77%)의 자격증은 음악치료학 학위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최소한의 학력 요건 명시 없이, 최소 9시간 혹은 1일의 교육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각 기관이 제시한 전공의 학위 취득자나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교육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리고 임상실습은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교육으로써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34.26%의 자격증은 임상실습 과정이 없다. 5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음악치료학 학사 및 석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체 강의를 음악치료 전공을 했는지 확인 할 수 없는 강사가 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이론교육의 일부과목을 타전공자가 교육하는 것은 융합학문의 특성상 가능하나, 음악치료학과 관련된 과목을 비롯하여 임상실습 교육을 음악치료를 교육받지 않은 자가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자격검정과 자격갱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격검정 없이 등록제로 자격을 취득하는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음악치료학 학위의 취득’으로 전문성을 평가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내의 자격검정 제도는 자격증마다 시험 방법, 과목, 합격 기준 등이 모두 달라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격의 사후관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외국의 요건과 비교하여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은 사후관리에 취약하다. 40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자격증 갱신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에 대한 조사연구이나,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격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정보공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미기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자격관리기관의 홈페이지가 없는 곳이 많았고,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대표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미기재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를 할 수 없었다. 개인의 연구 차원에서는 추후에도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자격 관련 공공기관에서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선정한 외국 사례에서는 국내와 같이 민간자격관리자가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발급되는 사례가 없었고 나라마다 자격제도의 근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사 공인민간자격증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외의 사례와 비교 보다는 국내의 보건 및 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증 중에서 공인 민간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현황은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일반인이나 관계자의 인식도에 관한 궁금증을 유발하였다. 음악치료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채용담당자, 음악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보호자,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과 같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사 자격증에 인식도, 자격증간의 차이와 등급에 대한 이해도, 자격증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맺음말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발급과 사후 관리가 통일된 민간자격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된 바와 같이 124개 자격증이 40개의 민간자격관리자가 각자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발급되고 있다.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규 ‘음악치료학 학위’ 과정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에 대한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희정. (2005). **음악치료 놀이극 중심의 음악치료 활동 연수를 통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고용노동부. (2013).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 방안**. 2013년 8월 2일 검색,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305>.
- 교육부. (2013). **교육부 보도자료-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2013년 7월 13일 검색, <http://www.pqi.or.kr/brd/brdView.do>.
-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 10339호. (2010).
- 김경숙. (1999). **음악치료에 대한 정신과 영역 전문인들의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김미숙, 주인중, 최영렬. (2011).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자격 관리·운영 체계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상진, 김덕기. (2012).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상진, 임동임. (2005). **호주의 자격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선호. (2009). **음악치료사 자격시험 도입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 김영미. (2001). **장애아동의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 부모, 음악치료사의 인식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김영선. (2013, 5월 19일). **민간자격증만 400개..발달장애치료사 아무나 한다?**. 파이낸셜 뉴스. Retrieved from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
- 김윤겸. (2010).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 음악치료 현황**.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 김혜진. (2008). **음악치료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인식조사 : 사회복지사와 음악치료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군포.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한국직업전망서: 한국 대표직업의 현재와 미래**. 서울: 저자.
- 박민경. (2011).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 박선영. (2008). **음악치료에 대한 전당뇨병/당뇨병 환자들의 만족도 및 관련 전문인들의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 박정선. (2004). **한국 공연예술치료의 실태조사 및 문제점 연구 : 연극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 박혜미. (2011).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실습교육 및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서하나. (2012, 10월 4일). 장애아동 치료에 부실 자격증 남발. **에이블 뉴스**. Retrieved from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
- 신명훈, 박종성. (2013). **자격관리 핸드북**.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영미. (2011). **방과후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자격기본법, 법률 제 11722호. (2013).
-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4781호. (2013).
- 정향진. (2006). **음악치료사 직무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현주. (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정현주. (2007). 음악치료에서의 개인적 역량 : 교육과 임상적 훈련에 대한 도전. **음악치료교육연구**. 4(2), 106-114.
- 진소정. (2002). **장애아동의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도 연구: 음악치료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천경미. (2007).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부모의 인식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군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민간자격조회**. 2013년 10월 21일 검색,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민간자격현황**. 2013년 10월 21일 검색, <https://www.pqi.or.kr/inf/qul/infQulSitCprView.do>.
- 한상근, 박천수, 이동임, 정윤경, 최동선, 정향진, 이주호. (2006).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은영. (2008). **음악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황춘애. (2007). **장애청소년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AMTA). (n.d.). *AMTA Professional Competencies*. Retrieved August 1, 2013, from <http://www.musictherapy.org/about/competencies/>.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AMTA). (n.d.). *FAQ's*. Retrieved August 1, 2013, from <http://www.musictherapy.org/faq/>.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AMTA). (n.d.). *What is music therapy*. Retrieved August 1, 2013, from <http://www.musictherapy.org/>.
- Australi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04). *Accreditation of music therapy courses*. Malvern: Author.
- British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BAMT). (n.d.). *Guidance on professional titles*. Retrieved August 3, 2013, from <http://www.bamt.org/british-association-for-music-therapy-resources/guide-to-professional-practice.html>.

-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89).
- The 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CBMT). (2012). *Candidate handbook*. Downingtown: Author.
- Deutsche Musik Therapeutische Gesellschaft (DMtG). (n.d.). *Verband*. Retrieved October 2, 2013, from <http://www.musiktherapie.de/index.php?id=9>.
- European Music Therapy Confederation (EMTC). (n.d.). *Register*. Retrieved September 10, 2013, from <http://emtc-eu.com/register/>.
- Fédération Française de Musicothérapie (FFM). (n.d.). *Status et règlement intérieur*. Retrieved September 4, 2013, from <http://www.musicotherapie-federationfrancaise.com/4.html>.
- Health and Care Professions Council (HCPC). (n.d.). *Register of approved programmes*. Retrieved September 2, 2013, from <http://www.hcpc-uk.org/education/programmes/register/index>.
- Health and Care Professions Council (HCPC). (n.d.). *Revalidation*. Retrieved September 2, 2013, from <http://www.hpc-uk.org/aboutregistration/revalid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Qualification Procedures of Music Therapist in Korea and the Comparison with Qualification Procedures in Other Countries.

Yoon, Mi-Young

Major in Music Therapy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ak, Eunmi Em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rious qualification procedures of music therapist in Korea and to grasp a current situation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music therapist qualification procedures in other countries. To identify current situation and potential problems of qualification procedures, 41 private organizations, which issue music therapist certification under private qualification by an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was identified and analyzed. It was done to provide the basis to develop an appropriate qualification procedure to expand a field of music therapy and provide high-quality music therapy services. The variables were the title of

the certification, level of education, educational requirements, hours and procedure of clinical training, qualifying examination, and re-qualification requirement and procedure. And it is conducted comparison analysis conditions item by item with fiv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UK, Germany, France.

The study indicates that unlike the five countries which use one unified title of certification on music therapist, in Korea, 40 private organizations register 25 different titles of the music therapist certification and issue them without an unified title. While all those five countries require a minimum qualification of degree of bachelor or master in Music Therapy as a prerequisite condition, in Korea 57 of the certifications, which accounts for 45.97%, are issued without any minimum standards of academic requirement. Only 4 of the certifications, which accounts for 3.23%, are issued with the demand of 'degree in Music Therapy'. Many of the certifications issued in Korea do not contain details of theory education and clinical training hours. It is verified that 49 of the certifications, which accounts for 34.75%, are issued without clinical training. In all those five countries, the issue and management of music therapist qualifications are controlled by a single institution. In contrast, in Korea, music therapist qualifications are issued and managed by 40 private organization respective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 cornerstone for improvement on systems of music therapist qualification.

Keyword: Qualification procedure of Music therapist , Qualification,
Qualification system

부록 목차

<부록 1> 국내 음악치료학 학위과정 개설 현황

<부록 2> 10년 이상 음악치료학 과정 운영 대학원의 교과 과목

<부록 3>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내용과 자격검정과목

<부록 4>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목록

<부록 1>

국내 음악치료학 학위과정 개설 현황 (2013년 10월 현재)

	학교명	학위	과정명
1	가천대학교	석사	특수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2	경기대학교	석사	문화예술대학원 음악치료학과
3	계명대학교	석사, 박사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4	고신대학교	석사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5	대구예술대학교	학사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6	대전대학교	석사	보건스포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7	명지대학교	석사, 박사	사회교육대학원 음악치료학과
8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9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박사	음악치료대학원
10	순천향대학교	석사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11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박사	교육대학원 음악치료교육전공,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12	인제대학교	석사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음악치료학전공
13	원광대학교	석사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14	전주대학교	학사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15	침례신학대학교	학사	교회음악과 음악치료전공
16	평택대학교	석사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음악치료전공
17	한세대학교	석사, 박사	치료상담대학원 상담학과 음악치료전공

<부록 2>

10년 이상 음악치료학 과정 운영 대학원의 교과 과목

대학명	교과 과정	교과 내용
명지대	음악치료 전공 과정	음악치료학 개론, 음악치료 기술, 음악치료 철학, 음악과 인간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신경 재활과 음악치료, 음악치료 임상실습1 2 3, 인턴십 노인을 위한 음악치료, 즉흥연주,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음악심리학, 음악심리치료, 그룹 즉흥연주, 음악치료 세미나, 기초 통계학, 연구 방법론
숙명여대	임상음악치료 전공과정	음악치료학 개론, 음악심리학 개론, 음악치료기술, 특수아동 심리학, 음악치료연구법, 기타 앙상블1 2 3, 피아노앙상블1 2, 이상심리학, 즉흥연주기술, 음악분석 개론 및 감상, 음악치료 실습1 2 3, 음악과 인간행동, 음악심리치료, 노인음악치료, 음악치료 철학, 신경재활 음악치료, 음악과 심상, 성악앙상블, 비 오케스트라 악기합주, 인턴십, 논문
이화여대	음악치료 교육 전공 과정	음악치료기술교육, 장애아동 음악치료교육, 음악치료교육실습 1 2 3,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교수법, 학습부진아를 위한음악치료교수법, 음악치료연구 방법론, 학교현장을 위한 음악치료교육, 음악치료교육 인턴십 인간행동과 음악, 음악과 학습이론, 그룹음악치료, 음악심리치료, 음악심리학, 음악치료 진단평가, 음악치료교육철학, 음악치료 임상기법, 즉흥연주기법, 고급음악치료기법, 현장연구, 음악치료세미나, 고급즉흥연주기술, 정신 병리와 음악치료
한세대	음악치료 전공 과정	음악치료기술, 음악과 인간행동, 음악치료 철학, 즉흥연주기술1 2,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노인을 위한 음악치료, 음악심리치료, 음악치료 방법론, 특수아동 심리학, 이상심리학, 음악치료 연구법, 임상실습1, 임상 분석, 인턴십, 논문

<부록 3>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의 자격내용과 자격검정과목

자격명칭	기관명	자격내용	자격검정과목
1 음악심리상담사	(사)가온누리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음악을 통하여 심리적평안과 상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평가/지도 할 수 있는 지도사 양성	1급, 2급: 음악심리상담론
	(사)경기도모던생활음악협회	음악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성격이해, 심리분석, 문제행동을 진단하고 상담 및 심리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 내담자(정서불안자, 장애우 등)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 지도, 조언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말함	1급, 2급, 3급: 음악치료개론, 아동심리학, 노인심리의 이해와 치료, 특수 장애아동의 이해와 치료
	국제리더관리협회	내담자에게 음악을 상담의 매개체로 활용하여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1급: 음악심리상담사 1급 2급: 음악심리상담사 2급
	(재)국제평생교육개발원	음악적 기술, 심리지원적 기술, 음악 활동적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대상자들의 필요를 사정하고 이에 기초한 음악지원 활동을 구성하며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1급: 음악심리상담학 개론, 정신병리와 음악심리상담, 음악심리 진단평가 ,음악심리 연구방법, 임상실습사례발표 2급: 음악심리상담기초이론, 음악교육기술, 음악심리상담기술, 임상음악심리지도기술, 즉흥연주(그룹즉흥연주)
	(사)국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음악심리상담사 자격 및 교육전문가	1급: 음악심리상담학 개론, 신경재활과 음악지도, 음악심리 진단평가, 음악심리 연구방법, 임상음악심리지도기술 2급: 음악지도기술, 음악교육기술, 음악심리상담기술, 임상음악심리지도기술
	(사)미래	음악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성격이해, 심리분석, 문제행동 진	1급: 음악심리지도의 원리와 방법, 음악

창의영재 교육연구 원	단을 하고 상담 및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며, 정서 불안 등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지도/조언하는 심리상담전문가	심리지도의 실제, 음악심리지도의 적용 및 분석 2급: 뮤직테라피와 재활, 이상심리 3급: 음악심리상담 기초이론, 음악심리 이해
전국통합 심리상담 협회	내담자에게 음악을 상담의 매개체로 활용하여 긍정적 사고와 신념체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정신적, 신체적 변화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임	1급, 2급: 음악심리학 개론, 음악심리학, 상담심리학, 즉흥연주/임상/사례발표
(사)한국 문화교육 협회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대상자의 문제행동과 상태를 개선 시키며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전문가, 1급, 2급: 음악심리상담기술교육, 음악심리상담 교육실습, 음악심리상담 교수법, 음악심리 상담 연구 방법론, 정신병리와 음악심리상담, 인간행동과 음악, 음악과 학습이론, 음악심리상담, 음악심리학, 음악심리상담 진단평가, 음악심리상담 교육철학, 음악심리상담임상 기법, 즉흥연주기법
(주)한국민 간자격개 발원	음악적 반응을 통해 보이는 내담자의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외면적, 내면적 문제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음악을 통하여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안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단일등급: 음악심리상담학, 음악심리학
한국복지 상담심리 협회	음악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성격이해, 심리분석, 문제행동 진단을 하고 상담 및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하며, 정서불안 등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지도/조언하는 심리상담전문가임	등급 없음: 음악심리상담사

(사)한국 복지상담 진흥회	음악심리상담사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대상자의 행동, 즉 자신감,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운동력, 학습능력, 정서적발달 등 사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교정하여 내담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이다.	등급 없음: 음악심리상담사
(주)한국상 담협회	음악심리상담사라 함은 음악을 통한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의 기초 이론과 인접한 학문을 학습하고, 복지관, 노인기관, 장애아 관련 기관, 취약계층 관련기관, 학교, 보호감호소 등의 장소에서 실기 학습을 통해 자격증 취득 후 음악심리상담사 직무	1급: 음악심리 이론, 음향의 기초, 소리의 특성, 음악과 생리학, 상담학 기본 이해, 심리검사, 음악심리상담 방향 2급: 미기재
(사)한국 심리상담 전문학회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인간관계 및 다양한 휴먼서비스 업무 속에서 개인 및 집단이해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음악심리학, 음악상담이론, 음악상담 적용 기술 분야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음악상담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음악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적응을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조력과정에서 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자	전문가: 음악심리상담적용편 1급, 2급: 음악심리이해
한국예술 심리치료 교육협회	음악심리상담평가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상담평가 교육 상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한다.	1급, 2급: 음악심리상담, 상담심리학, 가족상담, 발달심리학, 특수 상담, 음악과 생활,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아동상담
한국예술 치료협회	음악의 감상,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노랫말 등을 이용하여, 노인치매, 발달장애, 다문화 소외계층, 정신장애, 학대아동 등에게 심리적인 상담과 행동수정을 통하여 개선시키고 유 지시키는 전문가 양성	1급: 음악치료와 재활, 상담심리, 이상심리, 음악심리, 정신장애편람 2급: 음악치료와 재활, 상담심리, 이상심리, 음악심리 3급: 미기재
한국예술	1)복잡한 현대생활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성 정신적인 질환	2급: 음악치료학 외

콘텐츠교육원

(불안, 공포, 대인기피, 우울, 불면 등)으로부터 약물이 아닌 다양한 음악을 활용한 심리안정을 시키기 위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수상자들에게 음악 심리상담사(Therapist of Music psycho-counsel) 자격을 부여하려함.

2)음악이나 특정 사운드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작용하여, 마음의 균형과 생명 활동의 질서를 회복시켜, 본래 인간의 신체에 내재해 있는 Homeostasis을 높여 주는 심리 요법의 하나(박경규, 2000)로 생체음향학적 접근과 음악치료개론을 근거로 소정의 학습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거쳐 음악 심리상담사(1,2급) 자격을 부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함.

3)음악심리개론, 음악인지상담학, 생체음향학, 음악적용트리트먼트 프로세스 등 음악심리상담사로서 자질에 부응토록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지적장애자, 신체장애자, 노인복지증진, 유아 및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한국음악치료임상응용학회

음악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외면적, 내면적 문제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작업을 한다.

임상감독, 전문: 임상실습, 임상관련 이론

1급: 음악심리상담이론, 임상관련 이론, 임상 실습

2급: 음악심리상담학, 음악심리상담실습, 음악심리상담기술, 음악심리학

(주)한국자격검정평가원

산업화 기계화가 발달하면서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다중 지능적 사고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인간은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와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의 스트레스의 기저요인을 찾아 음악을 통해 근본적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음악심리상담이다. 음악상담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1급, 2급: 음악심리상담

		부적응을 겪는 개인 및 집단에 큰 도움이 된다.	
	한국 전문 자격증진 홍교육원	음악활동을 통한 심리분석 및 상담	단일등급: 미기재
	(사)한국 통합예술 심리치료 협회	사회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환기를 시켜 긍정적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상담적 자질과 인격을 갖춘 이들에게 음악의 개념, 이론, 음악상담기법에 대해 교육하고 검증해서 청소년들에게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급: 음악심리 상담의 실제, 음악심리 상담 임상실습 2급: 정신병리와 음악심리상담, 음악심리 상담사 윤리 3급: 음악상담 개념, 음악상담의 실제
	한울평생 교육협회	음악심리상담사 1급 - 교육상담, 심리, 재활, 치료관련학과 석사이상 졸업자로서 음악을 통한 심리상담 전문능력 검정 음악심리상담사 2급 - 교육상담, 심리, 재활, 치료관련학과 석사이상 졸업자로서 음악을 통한 심리상담 기초능력 검정	1급: 부모상담이론, 성격심리학, 즉흥연주의 실제 2급: 발달심리학, 심리검사법, 상담심리학
	국제리더 관리협회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정신과 신체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심리분석 및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기초한 음악지원 활동을 구성하며 실행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자격	1급: 음악심리지도사 1급 2급: 음악심리지도사 2급
	(사)인애 복지재단	음악을 통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태를 지도함	1급, 2급: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음악의 역사, 음악심리지도의 대상, 음악심리지도의 목표
2	음악심리 지도사	(사)한국 국공립대 학평생교 육원협의 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등 각 교육현장에서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음악심리학의 원리를 적용, 활용하여 내담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업무수행 능력 검정.
	(사)한국 대학평생	음악심리의 정의 내리고, 음악이 심리적으로 사용되어온 이론적 근거와 원리, 그리고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는 이론과 실	등급 없음: 음악심리지도의 개념과 이해, 음악심리지도의 원리와 방법, 음악심리지도의 실제, 음악심리지도의 적용 및 분석 등급 없음: 음악심리의 이해, 음악심리의 원리, 음악심리과정, 음악심리학, 음

	교육원 협의회	제를 통해 음악 상담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악심리 연주, 아동을 위한 음악심리, 청소년을 위한 음악심리, 정신질환 심리를 위한 음악심리, 노인을 위한 음악심리,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음악심리, 세션 발표, 임상실습
	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	음악적 기술, 심리지원적 기술, 음악 활동적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대상자들의 필요를 사정하고 이에 기초한 음악지원 활동을 구성하며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1급: 음악심리진단평가, 음악심리 연구 방법 2급: 음악치료개론, 음악교육치료, 음악심리치료, 임상음악심리지도기술
	한국음악치료사협회	특수상담영역의 활용 및 심리상담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음악상담교육과정으로서 자격을 준한다.	1급: 음악치료학, 사회복지학, 성격심리학 2급, 3급: 미기재
	(주)명인교육센터	인간심리의 기본을 음악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능력별로 자격증을 부여한다.	1급: 통합예술실제 2급: 정신역동음악 3급: 심리상담음악학
3	음악심리상담전문가	<p>엄청나게 불어나는 산업문명과 과학기술 문명에 직면하여 인간의 지식은 지나치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담아줄 정서와 감성, 인격의 성숙, 정신건강의 성숙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불균형과 불안, 콤플렉스를 초래하고 있다. 음악심리상담전문가는 음악을 통하여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안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p> <p>음악심리상담전문가는 음악을 통한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의 기초 이론과 인접한 학문을 학습하고, 복지관, 노인기관, 장애아 관련 기관, 취약계층 관련기관, 학교, 보호감호소 등의 장소에서 실기 학습을 통해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 진행은 전문분</p>	1급: 정신역동음악치료, 행동주의음악치료, 신경과학, 즉흥연주 2급: 음악치료학, 음악심리학, 정신분석학, 음악생리심리학, 행동주의 철학, 음악치료적용과 사례연구

			야의 여러 교수진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음악심리치료협회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사업(바우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4	음악심리 상담지도사	건국대학교 (사)한국 자원봉사 교육협회	일반병원, 정신병원, 재활원, 지역사회, 건강센터, 양로원, 사회복지 기관(예: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관등) 교도소 학교, 통증관리, 스트레스관리, 유아를 위한 감각 자극제공, 건강증진 프로그램, 산후조리원등에서 음악 심리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신체건강의 복원·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음악을 활용해 내담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급: 정신의학, 심리학, 임상심리학, 특수교육, 임상 1급: 음악치료, 음악과 생활,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5	계슈탈트 임상음악 심리사	대한음악 치료학회	임상전문가로서 심신의 복원 및 회복 유지 향상을 위해 재활심리 활동을 하는 임상전문가	전문가: 연구논문 심사, 임상 동영상 30분 1편 1급: 사례 시뮬레이션 심사 (사례발표), 임상 동영상 30분 1편 2급: 필기(계슈탈트 심리학 개론), 필기(임상음악심리학), 필기(영역별 기법), 실기
6	난타음악 심리상담사	(사)국제 민간자격 전문협회	난타음악심리상담사는 현대인의 심리불안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일의 활력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난타음악이론, 심리학이론, 상담학 이론, 난타음악 심리상담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익혀 정서적인 불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그려줄 있다.	전문강사, 1급, 2급, 3급: 난타음악심리상담이론과 실제
7	난타재활사	(사)국제 MBPA 학	난타재활사란 발달적으로 지체된 아동이나 심리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에 타악을 활용하여 발달재활과 심리재활을	1급, 2급, 3급: 미기재

	문진홍협 회	전개하는 자를 말한다. 타악은 북, 장구 등이 활용되고 난타 재활사는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음악교실, 방과 후 교실 등에서 활동한다.	
8	난타특수 교육사	(사)국제 MBPA학 문진홍협 회	난타특수교육사란 타악기를 활용하여 특수교육 목적을 위해 공연 및 음악교육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난타특수교육사는 방과 후 학교, 복지관, 아동교육기관 등에서 타악퍼포먼스를 지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급: 난타특수교육평가론, 난타특수교육론 2급: 난타특수교육 교수 학습 방법론, 난타특수교육 이론 심화, 난타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3급: 난타특수교육론
9	노래심리 상담사	(사)국제 민간자격 전문협회	노래심리상담사는 음악 중에서 노래 부르고 감상하기를 통한 심리치료를 한다. 노래는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능력이 풍부하여 그 가사와 리듬에서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음을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다. 클래식 노래에서부터 대중가요와 종교노래와 k-pop까지 다양한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 내담자의 안정치유를 유도한다. 전공적으로 국악이나 유행가나 팝 종교음악 등으로 전문분야를 나누어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 강사, 1급, 2급: 노래심리상담이론과 실제
10	노래심리 지도사	국제지식 인력개발 원	노래심리지도사는 음악을 활용하여 노래 부르고 감상하기를 통한 심리상담을 한다. 노래는 그 가사와 리듬에서 인간의 영혼과 감성을 울리는 능력이 풍부하여 상처 난 마음을 상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음을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다. 클래식 노래에서부터 대중가요와 종교노래와 k-pop까지 다양한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 내담자의 안정을 유도한다. 국악이나 유행가나 팝 종교음악 등으로 전문분야를 나누어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노래를 통한 마음의 상처 상담과 아름다운 감성을 울려 건강한
			교육 강사: 노래지도법, 심리평가방법, 심리상담 1급: 노래지도법,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평가방법 2급: 노래지도법, 상담이론

			<p>삶을 살도록 도모하는 일이 노래심리상담사의 역할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청소년 및 가족과 관련된 상담 현장에서 음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래심리상담사의 양성 및 배출 2. 대학과정을 보완하여 상담에서 임상능력을 갖춘 노래심리상담사의 양성 3. 노래심리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 	
11	노인음악 심리지도사	한국음악 치료사협회	<p>노인연령에서의 다양한 인지프로그램의 여가 활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연구 및 개발 등을 학습하고 학습된 내용을 검정한다.</p> <p>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치매질환 및 노인을 위한 음악치료를 학습하고 학습된 내용을 검정한다.</p>	<p>1급: 치매인지재활, 음악치료학, 사회복지학, 성격심리학</p> <p>2급: 음악치료학, 성격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치매노인인지재활, 치매노인음악치료</p> <p>3급: 치매노인음악치료</p>
12	임상음악심리사	대한음악치료학회	<p>임상음악심리사는 심신의 복원과 향상 유지를 위해 전문 영역에서 재활 심리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가</p>	<p>전문가, 1급: 논문, 실기</p> <p>2급, 3급: 심리학개론, 임상음악심리학, 영역별기법, 실기</p>
13	임상음악전문가	(사)한국음악치료학회	<p>본 자격증은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등 음악을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이다.</p>	<p>1급, 2급, 준 2급: 음악치료학</p>
14	음악심리분석사	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	<p>노인대학이나 특수학교 등 각 교육현장에서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음악적 심리지원과 음악 활동적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대상자들의 필요를 사정하여 내담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업무수행과 이에 기초한 음악지원 활동을 분석하며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함</p>	<p>등급 없음: 미기재</p>

15	음악심리 피정지도자	한국예술 치료협회	피정지도자는 성당 및 교회, 사찰, 청소년수련기관, 상담시설 등에서 음악과 신앙을 통한 심리상담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우면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지도자	등급 없음: 화해와 치유, 종교음악과 지도법, 음악치료와 재활, 상담심리학
16	음악정서 인지상담 사	이엠사회 서비스교 육개발원	음악매체 및 도구를 통한 자기 정서이해와 인지능력을 결합시켜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하고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검증된 전문 인력을 양성	1급: 음악정서관계학, 음악정서인지상담 실제, 진단 및 분석 평가, 음악정서인지 프로그램 실제 2급: 음악정서인지의 이해, 정서심리학, 음악생리심리학, 음악정서인지상담론
17	음악중재 전문가	(사)전국 음악치료 사협회	임상현장에서 음악을 중재로 하여 전문가적인 능력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능력	등급 없음: 음악중재이론, 음악중재기술, 음악중재윤리
18	장애인난 타지도사	(사)국제 MBPA학 문진흥협 회	장애인난타지도사란 난타활동을 활용하여 아동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달을 전개하고 아동의 지체된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난타지도사는 음악교육원, 복지시설, 아동교육기관, 아동전용시설 등에서 장애인난타지도사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1급: 장애인난타지도평가론, 장애인난타 지도론 2급: 장애인난타지도 교수 학습 방법론, 장애인난타지도 프로그램 개발론, 장애 인난타지도론 3급: 장애인난타지도론, 특수교육학 개 론
19	재활음악 전문가	한국재활 음악치료 학회	음악을 통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재활음악프로그램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슈퍼바이저, 2급 : 재활론,재활음악학,재 활음악심리학,재활정신역동음악심리학, 재활음악사례연구 1급: 고급 재활론, 고급 재활음악학, 고 급 재활음악심리학, 고급 재활정신역동 음악심리학, 고급 재활음악사례연구 3급: 재활론, 재활음악심리학
20	재활타악	한국재활	타악기를 활용하여 공연 및 재활음악교육을 지도하는 자를	최고급, 1급: 미기재

	전문가	음악치료 학회	말한다. 재활타악전문가는 통합 장애인 , 통합 병인 , 비장애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복지관, 아동청소년성인 교육기관 등에서 재활타악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2급, 3급 : 창작 작품 실기
21	정서발달 음악상담 사	비전누리 교육상담 심리연구 소	아동의 심리문제를 악기활동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하 는 지도자 훈련과정	단일등급: 음악심리상담기법의 이해
22	즉흥난타 심리지도 사	(사)국제 MBPA학 문진흥협 회	즉흥난타심리지도사란 즉흥적으로 창작되는 난타활동을 통 해 심리적 불균형이 있는 사람한테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즉흥난타심리지도사들은 복지관, 방 과 후 교실, 교육기관 등에서 즉흥난타심리지도사로 활동한 다.	최고지도자: 즉흥난타심리지도총론, 즉 흥난타심리지도론 1급: 즉흥난타심리지도 교수-학습 방법 론, 즉흥난타심리지도 프로그램 개발론, 즉흥난타심리지도론 2급, 3급: 즉흥난타심리지도론, 즉흥난타 심리론 개론
23	특수발달 음악교육 사	(사)국제 MBPA학 문진흥협 회	특수발달음악교육사란 발달이 지연된 아동한테 음악놀이를 통해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말한다. 특수발달음악교 육사는 악기, 노래 등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흥미로운 놀이로 음악의 구성요소를 적용시키고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방과 후 교실 등에서 특수음악발달교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급: 특수발달음악교육총론, 아동발달, 실무능력평가 2급: 특수발달음악교육 방법론, 특수발 달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특수발달 음악교육론, 실무능력 평가 3급: 특수발달음악교육론, 아동발달론, 실무능력 평가
24	특수음악 심리상담 사	(사)가온 누리	음악을 통한 장애아동의 심리발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적 응 및 평가 능력을 검정하는 업무	1급: 특수음악심리상담론 2급: 특수음악심리상담사전문지도론
25	특수타악	한국재활	타악기를 활용하여 공연 및 특수음악교육을 지도하는 자를	최고급, 1급: 특수교육, 특수리듬임상

전문가	음악치료 학회	말한다. 특수타악전문가는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복지관, 아동청소년성인교육기관 등에서 특수타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2급, 3급: 실기
-----	------------	--	------------

<부록 4>

국내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목록 (2013년 10월 현재)

(A-없음, B-제한 없음, C-미기재)

기관명	자격명칭	자격조건						
		학력	교육 (시간)	임상실습 (시간)	시험	자격유 지교육	취득자수	기타
1 (사)가온 누리 (2011- 1041)	1 음악심리상 답사(1급)	B	C	C	필기	A	C	
	2 음악심리상 답사(2급)	B	30 A	30 A	필기	A	C	음악관련 학사, 전문학사 이상이면 우 편교육
2 (사)가온 누리 (2012- 1251)	3 특수음악심 리상답사(1 급)	B	C	C	필기	A	C	
	4 특수음악심 리상답사(2 급)	B	C	C	필기	A	C	
3 건국대 학교 (2013- 0839)	5 음악심리상 답지도사(2 급)	B	C	C	필기	C	9명 (2012년)	
4 (사)경기 도모던	6 음악심리상 답사(1급)	학사	C	60	필기	A	20명 (2012년)	2급 자격증 소지자

생활음악협회 (2012-1241)	7	음악심리상 답사(2급)	학사	60	30	필기	A		음악학원원장이거나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8	음악심리상 답사(3급)	고졸	20	3	필기	A		
5 국 제 리 더 관 리 협 회 (2013-0867)	9	음악심리상 답사(1급)	B	C	C	필기	A	21명 (2012년)	심리상답사1급 자격증은 하루 9시간 수강만 하면 다른 자격증 3개와 함께 발급 됨.
	10	음악심리상 답사(2급)	B	C	C	필기	A		
6 국 제 리 더 관 리 협 회 (2013-0868)	11	음악심리지 도사(1급)	B	C	C	필기	A	14명 (2012년)	심리상답사1급 자격증은 하루 9시간 수강만 하면 다른 자격증 3개와 함께 발급 됨.
	12	음악심리지 도사(2급)	B	C	C	필기	A		
7 (사)국제 민 간 자 격 전 문 협 회 (2012-1404)	13	난타음악심 리 상 답 사 (전문강사)	B	C	C	필기 실기	C	C	학력 및 경력 인정 시 실기와 임상실 습 면제
	14	난타음악심 리 상 답 사 (1급)	B	C	C	필기 실기	C	C	학력 및 경력 인정 시 실기와 임상실 습 면제
	15	난타음악심 리 상 답 사 (2급)	B	C	C	필기 실기	C	C	학력 및 경력 인정 시 실기와 임상실 습 면제

		16	난타음악심 리 상 담 사 (3급)	B	C	C A	필기 실기 필기	C	C	학력 및 경력 인정 시 실기와 임상실 습 면제
		17	노래심리상 담 사(전 문 강사)	B	C	C A	필기 실기 필기	C	C	학력 및 경력 인정 시 실기와 임상실 습 면제
8	(사)국제 민 간 자 격 전 문 협 회 (2012- 1403)	18	노래심리상 담 사(1급)	B	C	C A	필기 실기 필기	C	C	학력 및 경력 인정 시 실기와 임상실 습 면제
		19	노래심리상 담 사(2급)	B	C	C A	필기 실기 필기	C	C	학력 및 경력 인정 시 실기와 임상실 습 면제
	(사)국제 M B P A	20	난타재활사 (1급)	B	C	A	필기 실기	A	C	
9	학 문 진 흥 협 회 (2012- 1441)	21	난타재활사 (2급)	B	C	A	필기 실기	A	C	
		22	난타재활사 (3급)	B	10	A	필기 실기	A	C	
	(사)국제 M B P A	23	난타특수교 육 사(1급)	B	C	A	필기	A	C	
10	학 문 진 흥 협 회	24	난타특수교 육 사(2급)	B	C	A	필기	A	C	
		25	난타특수교	B	C	A	필기	A	C	

	(2010-0340)		육사(3급)							
			장애인난타							
	(사)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	26	지도사(1급)	B	A	A	필기	A	C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경력자
11		27	장애인난타 지도사(2급)	B	10	A	필기	A	C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2011-0325)	28	장애인난타 지도사(3급)	B	10	A	필기	A	C	
		29	즉흥난타심리 지도사(최고지도자)	B	C	A	필기 실기	A	C	
12	(사)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	30	즉흥난타심리 지도사(1급)	B	24	A	필기 실기	A	C	
	(2012-1078)	31	즉흥난타심리 지도사(2급)	B	24	A	필기 실기	A	C	
		32	즉흥난타심리 지도사(3급)	B	24	A	필기 실기	A	C	
13	(사)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	33	특수발달음악 교육사(1급)	B	C	A	온라인	A	C	

				180						
	홍협회 (2012-0521)	34	특수발달음 악 교육사 (2급)	B	A	A	온라인	A	C	MBPA에서 발급한 재활놀이교육사, 놀이재활사 등 재활놀이 관련 자격증 취득자
		35	특수발달음 악 교육사 (3급)	B	C	A	온라인	A	C	
14	국제지식인력 개발원 (2013-0445)	36	노래심리지 도사(교육 강사)	B	C	C	필기 실기	C	C	
		37	노래심리지 도사(1급)	B	C	C	필기 실기	C	C	
		38	노래심리지 도사(2급)	B	C	C	필기	C	C	
15	(재)국제 평생교육 개발원 (2012-0196)	39	음악심리상 담사(1급)	B	C	C	필기	C	C	대학원 관련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본 개발원이나 유관기관에서 음악심리상담사 2급 또는 이제 준하는 자격 취득자
		40	음악심리상 담사(2급)	B	C	C	필기	C	C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본 개발원이나 유관기관에서 음악심리상담사 과정 이수자
16	(사)국제 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 (2013-	41	음악심리상 담사(1급)	B	C	C	필기 실기	C	C	대학에서 관련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음악심리상담사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2	음악심리상 담사(2급)	B	C	C	필기 실기	C		대학에서 관련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음악심리상

0661)

담사 과정을 이수한자

17	대한음악치료학회 (2013-0914)	43	계슈탈트 임상음악심 리사(전문 가)	학사	50	C	필기 실기	C	33명 (2012년)	1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자, 전문 가(50시간) 과정을 수료한자 중 임상 시간 200시간 이상인 자
		44	계슈탈트 임상음악심 리사(1급)	학사	50	C	필기 실기	C		2급 이상자로 1급(50시간) 과정을 수 료한자 중 임상시간 100시간 이상인 자.
		45	계슈탈트 임상음악심 리사(2급)	전문 학사	50	C	필기 실기	C		음악임상심리사 3급 이상자로 2급(50 시간) 과정을 수료한자 중 임상시간 50시간이상인 자.
18	대한음악치료학회 (2013-0915)	46	임상음악심 리사(전문 가)	학사	C	C	필기 실기	C	54명 (2012년)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으로 임상 500시간이상인자 관련학 박사 면제
		47	임상음악심 리사(1급)	학사	C	C	필기 실기	3년간 2회		2급 이상자로 1급 과정을 수료한자 중 임상 100시간 이상인자 관련한 석사 면제
		48	임상음악심 리사(2급)	전문 학사	90	C	필기 실기			3급 이상자로 2급(90시간) 과정을 수 료한자 중 임상 80시간 이상인자
		49	임상음악심 리사(3급)	전문 학사	45	C	필기 실기	C		3급(45시간) 과정을 수료한자 중 임상 시간 40시간이상인 자
19	(주)명인 교육센	50	음악심리상 담전문가(1	고졸	C	C	필기 실기	C	C	

			지상담사(2 급)	학사						
23	(사)인애 복지재단 단 (2008- 0428)	59	음악심리지 도사(1급)	B	C	C	실기	C	180명(매 일답변)	
		60	음악심리지 도사(2급)	B	48	A	필기	C		
24	(사)전국 음악치 료사협 회 (2011- 0565)	61	음악중재전 문가(단일 등급)	음 악 치 료 전 공 학사 및 석사	500	1000	필기	5년 간 80시간	234명	
25	전국통 합심리 상담협 회 (2012- 1311)	62	음악심리상 담사(1급)	전문 학사	C	C	필기 실기	C		
		63	음악심리상 담사(2급)	전문 학사	36	30	필기 실기	C	11명	워크샵 1회 참석
26	한국교 육복지 행정연 구원 (2011- 0112)	64	음악심리분 석사(단일 등급)	B	C	C	필기	C	C	
27	(사)한국	65	음악심리지	B	90	A	필기	A	C	부경대, 부산교대

국 공 립 대 학 평 생 교 육 원 협 의 회 (2009- 0305)	66	도사(1급) 음악심리지 도사(2급)	B	90	A	실기 필기 필기 실기	A	C	강원대, 부산교대, 제주교대, 창원대
	67	음악심리지 도사(3급)	B	90	A	필기 실기	A	C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광주교대, 목 포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순천 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사)한국 대 학 평 생 교 육 원 협 의 회 (2009- 0265)	28	음악심리지 도사(단일 등급)	전문 학사	180	A	필기 실기	A	C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계명대, 계명 문화대, 광주여대, 대구예술대, 영남신 학대, 울산과학대, 이화여대, 제주한라 대, 한양대
(사)한국 문 화 교 육 협 회 (2010- 0371)	69	음악심리상 답사(전문 가 과정)	학사	C	C	C	C	C	
	70	음악심리상 답사(1급)	학사	C	C	C	C	C	
	71	음악심리상 답사(2급)	전문 학사	C	C	C	C	C	
(주)한국 민 간 자 격 개 발	30	음악심리상 답사(단일 등급)	B	C	C	필기	C	C	

	원 (2013- 1209)										
31	한국복지상담심리협회 (2012-0375)	73	음악심리상담사(단일등급)	고졸	C	C	필기	C	25명 (2011년)		
32	(사)한국복지상담진흥회 (2012-1310)	74	음악심리상담사(단일등급)	B	C	C	필기	C	15명 (2012년)		
33	(주)한국상담협회 (2012-1242)	75	음악심리상담사(단일등급)	고졸	C	C	필기	C	6명 (2012년)		
34	(사)한국심리상담전문학회 (2012-	76	음악심리상담사(전문가)	고졸	C	A	필기	5년간 8시간	C	본 협회 및 유관 기관에서 1급 자격 취득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시간 인정 -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심리상담사·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교사·
					80						

0238)	77	음악심리상 답사(1급)	고졸	<u>40</u> C	A	필기	5년간 8시간	C	본 협회 및 유관 기관에서 2급 자 격 취득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을 취득한 자	경찰·군 장교·성직 자, 사회복지사·보 육교사 자격증 소 지에 준하는 자격 을 취득한 자
	78	음악심리상 답사(2급)	고졸	<u>20</u> C	A	필기	5년간 8시간	C		
35	한 국 예 술 심 리 치 료 교 육 협 회 (2013- 1265)	79	음악심리상 답사(1급)	전문 학사	<u>C</u> A	A	필기	C	C	과정면제-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 상의 수련, 석사과정은 3년 이상의 수 련을 한 자
		80	음악심리상 답사(2급)	전문 학사	<u>C</u> A	A	필기	C		
36	한 국 예 술 치 료 협 회 (2012- 0217)	81	음악심리상 답사(1급)	학사	<u>120</u> 16	A	필기 실기	C	796명 (2000년 ~ 2012 년)	2급 취득 후 1년 이상자
		82	음악심리상 답사 (2급)	전문 학사	120	60시간	필기 실기	C		
		83	음악심리상 답사 (3급)	고졸	C	C	필기 실기	C		
37	한 국 예	84	음악심리피	고졸	2박3일	C	필기	C	23명	

	술 치료 협회 (2012- 1244)	정 지도 자 (단일등급)				실기	(2012년)	
38	한 국 예 술 콘 텐 츠 교 육 원 (2011- 0989)	음악심리상 답사 (2급)	고졸	온라인 25회	A	온 라 인 A	5명 (2011년)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이라고 광고함
39	한 국 오 르 프 음 악 치 료 연구소 (2009- 0375)	음악심리지 도사 (전문 가)	석사	C	200	C	40시간	44명 (2010~ 2012년) 2급 자격 취득자(임상 2년) 음악치료 석사 소지자 관련대학원 재학 중인 자
		음악심리지 도사(1급)	학사	C	$\frac{A}{C}$ 120	필기 실기	40시간	
		음악심리지 도사(2급)	전문 학사	120	60	필기 실기	40시간	
40	한 국 음 악 심 리 치 료 협 회 (2011- 1005)	음악심리상 담전문가 (1급)	전문 학사	180	10회기	필기	C	임상실습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 에게 면제 여름, 겨울 단기 과정
		음악심리상 담전문가 (2급)	전문 학사	$\frac{120}{80}$	A	필기	C	
41	한 국 음 악 치 료	노인음악심 리지도사	B	9	A	필기	C	C

		(1급)									
	사협회	노인음악심									
	(2012-	리 지도 사	B	9	A	필기	C	C			
	1257)	(2급)									
		노인음악심									
		리 지도 사	B	C	A	필기	C	C			
		(3급)									
	한 국 음	음악심리지	석사	120	60	필기	20시간	C		음악치료대학원 졸업자 및 2급 자격	
	악 치 료	도사(1급)								취득자	
42	사협회	음악심리지	학사	60	30	필기	20시간	C		음악관련 전공 4년제 졸업자 및 3급	
	(2011-	도사(2급)								자격증 소지자	
	0879)	음악심리지	전문	60	30	필기	20시간	C			
		도사(3급)	학사								
		음악심리상									
	한 국 음	담 사(임 상	석사	C	96	C	C			본 학회 전문음악치료사 자격증 소지	
	악 치 료	감독)								자로 5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공 관	
	임 상 응	음악심리상	석사	C	40	C	C	9	명	련 강의경력 2년 이상자로 임상시수와	
43	용학회	담사(전문)						(2005년)		강의시간이 총 200시간 이상인 자	
	(2012-	음악심리상	석사	C	1040	C	C			본 학회 음악치료사 1급 자격증 소지	
	1309)	담사(1급)								자로 3년간 임상시수가 주당 40시간	
		음악심리상	전문	C	A	C	C			이상인 자	
		담사(2급)	학사							음악치료학 석사학위 소지자	
	(사)한국	임상음악전	석사	C	C	필기	C	427명		대학원에서 음악치료학 복수(부)전공자	
44	음 악 치	문가(1급)						(2010~		나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에서 음	
										악치료사 과정을 수료한 자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	
										서 음악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자
			C	C				음악치료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
			C	C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한 자,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료학회 (2012-0161)	102	임상음악전문가(2급)	학사		필기	C	2011년)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음악치료 교육과정(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하고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음악치료 준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C	C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2년 혹은 3년제 대학에서 음악치료 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에서 음악치료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5	(주)한국 자격검	104	음악심리상담사(1급)	B	C	C	필기	C C

	정 평 가 원 (2013- 0810)	105	음악심리상 답사(2급)	B	C	C	필기	C		
46	(사)한국 자 원 봉 사 교 육 협 회 (2012- 0399)	106	음악심리상 답 지 도 사 (1급)	고졸	1과목	A	온 라 인	A	1227명 (2009~ 2013년)	
47	한 국 재 활 음 악 치 료 학 회 (2012- 0249)	107	재활음악전 문 가 (수 퍼 바이저)	석사	180	1500	필기 실기	A	C	1급 소지자, 논문발표
		108	재활음악전 문 가 (1급)	석사	180	1500	필기 실기	A	C	사례발표 2회, 재활관련(음악/미술/예 술치료)학과 졸업 및 수료(단, 4년제 졸업 후 임상경력 인정)
		109	재활음악전 문 가 (2급)	전문 학사	180	1500	필기 실기	A	C	
		110	재활음악전 문 가 (3급)	전문 학사	C	C	필기 실기	A	C	
48	한 국 재 활 음 악 치 료 학 회 (2012- 1446)	111	재활타악전 문 가 (최 고 급)	전문 학사	C	C	필기 실기	A	C	
		112	재활타악전 문 가 (1급)	전문 학사	C	C	필기 실기	A	C	
		113	재활타악전 문 가 (2급)	B	C	C	실기	A	C	

		114	재활타악전 문가(3급)	B	C	C	실기	A	C
49	한 국 재 활 음 악 치 료 학 회 (2012- 1240)	115	특수타악전 문가(최고 급)	전문 학사	C	C	필기 실기	A	C
		116	특수타악전 문가(1급)	전문 학사	C	C	필기 실기	A	C
		117	특수타악전 문가(2급)	B	C	C	필기 실기	A	C
		118	특수타악전 문가(3급)	B	C	C	필기 실기	A	C
50	한 국 전 문 자 격 증 진 흥 교육원 (2013- 1299)	119	음악심리상 답사(단일 등급)	B	C	C	필기	C	C
		(사)한국 통 합 예 술 심 리 치 료 협 회 (2013- 0505)	120	음악심리상 답사(1급)	고졸	33시간	A	필기	A
51	회	121	음악심리상 답사(2급)	고졸	33시간	A	필기	A	C
		122	음악심리상 답사(3급)	고졸	33시간	A	필기	A	
52	한 울 평 생 교 육	123	음악심리상 답사(1급)	석사	C	C	필기	C	C

협회 (2012- 1243)	124	음악심리상 답사(2급)	전문 학사	C	C	필기	C	C
-----------------------	-----	-----------------	----------	---	---	----	---	---
